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로크 『통치론』

정 윤 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4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로크 『통치론』

정 윤 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심재룡

김남두

김영정

허남진

윤선구(주간)

발간사

2002년 8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아래 우리 연구소의 전임연구팀이 수행하고 있는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1차 년도 연구결과 총서를 『철학사상』 별책 제2권으로 엮어낸다.

박사 전임연구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특별연구팀은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 주요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근간 개념들과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작업의 일차적 성과물로서 이 연구총서를 펴냄과 아울러, 이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 서양어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철학 고전의 텍스트들을 한국어 표준판본이 확보되는 대로 디지털화하여 상식인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작업은 오늘날의 지식정보 사회에서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장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중요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 연구가가 나누어 맡아, 우선 각자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어서 중심 개념들과 연관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획 사업은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

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우선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는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연구 사업의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국 사회 철학 문화 향상에 작으나마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3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연구책임자

백 종 현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4호

로크 『통치론』

정 윤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머리말

로크의 『통치론』은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전후로 한 격동의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탄생한 시대의 산물이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풍랑이 심했던 만큼 이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있었던 로크의 삶 역시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이었고, 따라서 『통치론』 속에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삶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왕권신수설을 비롯하여 신분제적 질서를 뒷받침하던 기준의 정치 이론을 그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활짝 열고자 했던 휘그 당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일원이었던 로크는 신학 공부, 의학 공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 과정과, 배척 논쟁을 둘러싼 왕권 다툼, 망명과 금의환향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생애를 거치면서 다듬은 정치 이론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훌륭히 완수해 내었다. 로크의 인생 역정과 사상 편력은 마치 종선과 위선처럼 엮여 『통치론』이라는 결과물을 뱋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애슐리 경의 수술을 접도하는 것과 같은 우연적이고 미시적인 인생의 사건이 명예 혁명과 같은 필연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과 어우러져 뱃어내는 조화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생과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탄생된 『통치론』은 인간의 천부인권을 옹호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전통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생명, 자유, 자산을 포함하는 소유권을 정당화하고, 자연법과 이성의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구성에서 동의와 계약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인민의 저항권을 옹호하는 것이 『통치론』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통치론』에 포함된 이러한 핵심 내용들은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미국에 전해져 미국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미국독립선언서」의 많은 구절이 『통치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사상은 미국 건국 정신의 지주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이념과 정치 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고전인 『통치론』의 개념 분석 작업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부담이었다. 비록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 이론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간접적으로 로크의 정치 이론을 접할 수는 있었지만 로크 전공자는 아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개인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작업이 단지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고전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공동작업이기에 연구 결과물을 보면서 커다란 책임감과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책의 작업을 맡았던 사람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한다.

연구를 마치면서 처음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신청서를 작성하던 때가 떠오른다. 며칠 밤을 새면서 계획서를 다듬어 봤지만 전체 작업의 방향성이 분명해지지 않아 상당히 고민했었다. 세부적인 신청서 작성에서 부닥치는 애로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신청 마감시간을 앞두고는 한 밤중에 소속 연구자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많았다. 그리던 것이 어느덧 1차 년도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처음 연구에 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다행히 『통치론』에 관해서는 서강대학교의 강정인, 문지영 선생님이 신뢰할 만한 번역본을 출간하셔서 이를 표준 판본으로 삼아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었다. 특히 두 분은 로크의 정치 사상에 관한 주요 이론가들의 논문을 편집해 번역한 『로크의 이해』까지 내놓으신 터라 이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 두 분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린다. 사회철학으로 인도해주신 차인석 교수님, 전체 연구의 책임을 맡으셔서 연구를 독려하신 백종현 교수님, 처음으로 대학강단에 서게 해주셨던 대림대학의 홍종률 교수님, 동료 연구자인 손철성 선생, 연구 공간을 함께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영 선생, 최영천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비록 초반기의 연구 성과가 기대에 미흡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시작된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후학들을 위한 넋두리를 대신한다.

2003년 5월 10일
관악산 연구실에서 정 윤 석

목차

제1부 로크의 생애와 『통치론』 해제	1
1. 로크의 생애	1
로크 연보	6
2. 『통치론』 해제: 구성과 논리	8
『통치론』의 목차	13
제2부 『통치론』의 개념 체계도와 개념 연관표	14
1. 각 장별 개념 체계도	14
2. 각 장별 개념 연관표	17
제3부 『통치론』의 주요 개념 분석	24
서론: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이론	24
I . 소유권(생명, 자유, 자산)	26
1. 소유권의 정의	26
2. 소유권의 기원	29
3. 소유권의 제한(노동, 편의, 남에게 피해)	32
4. 소유권의 제한 철폐	34
II . 자연상태	41
1. 자연상태의 정의	41
2. 자연법(이성, 하느님)	44
3. 로크의 이중성: 흉스와의 유사성과 차이성	48
4. 자연상태에 대한 반론	51
5. 자연상태와 전쟁상태	53
6. 노예계약의 불가능성	55
7.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자연상태 이론의 귀결)	56
III . 사회 계약론	58

1. 사회 계약론의 기원	58
2. 두 가지 사회계약 I : 사회계약과 통치계약	60
3. 두 가지 사회계약 II: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	61
4. 신탁(trust)으로서 계약	63
5. 로크의 사회 계약론 정리	65
6.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	66
7.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의와 가치	67
IV. 정치사회(시민사회)	68
1. 정치사회(시민사회)의 정의	68
2. 정치사회의 구성원	70
3. 정치 권력(처벌)	72
4. 정치사회(시민사회)와 절대군주제	73
5. 절대군주제와 자연상태	74
6. 정치사회의 기원: 사회계약, 동의, 협정	76
7. 부권, 전제 권력, 정치 권력	84
8. 다수결의 원리	86
9. 정치 사회의 목적	88
10. 자연상태에 결여된 것 혹은 정치사회에 추가된 것	89
V. 정부 형태와 정부의 구성	91
1. 정부의 형태: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91
2. 권력 분립: 입법권, 행정권, 연합권	92
3. 최고의 권력으로서 입법권의 범위	95
4. 대권(大權, prerogative)	99
5. 정복과 찬탈	102
VI. 인민의 저항권(정부의 해체)	110
1. 정부의 해체와 사회의 해체	110
2. 입법부의 변경	112
3. 최고 집행권자의 태만	115
4. 신탁 위반	116

5. 왕의 자격상실	118
6. 인민의 저항권에 대한 반론	120
7. 최후, 최고의 주권자로서 인민	123
결론: 로크 정치 사상의 현대적 의의	125
참고문헌	130

제1부 로크의 생애와 『통치론』 해제

1. 로크의 생애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1632년 영국 서미싯(Somerset) 주의 량턴(Wrington)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해는 곧 빌발할 내전에서 처형당할 운명의 찰스 1세의 지배가 7년 째되는 해였고, 흉스가 아직 그의 주요 저작을 완성하기 전이며, 스피노자가 태어난 해이기도 했다. 그가 태어난 작고 초라한 생가는 그의 외가였다. 로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청교도적인 상인 가문 출신이었는데, 아버지 쪽은 의류업에, 어머니 쪽은 제혁업에 종사해온 집안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서머싯주 치안 판사들의 법률 대리인이자 서기로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내전 당시 의회군에서 복무하기도 했는데, 로크는 아버지의 상관이자 당시 유명한 정치가였던 포프햄(Alexander Popham)의 후원에 힘입어 웨스트민스터 학교(Westminster School)에 들어가게 되었다. 로크는 1652년에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Christ-Church College)로 진학하였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줄곧 연구원으로서 그곳에 머물렀다.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로크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안정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여하튼 옥스퍼드에서 로크는 헤브리어 및 아랍어 문헌을 포함하여 고전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으며, 의학 공부를 통해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연계에 대하여 알게 되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동안 로크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 중의 하나는 종교적 관용의 문제였다. 그런데 종교적 관용과 관련해서 로크가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종교문제에 대한 시민행정관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비국교도 집단들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종파주의자의 견해에 맞서 신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은 ‘무관한 사항’에 관한 한 전적으로 시민행정관의 권위를 옹호하였다. 로크는 시민행정관이 가진 권위는 시민사회, 나아가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그후 몇 년 동안 자연법 자체의 성격과 인간이 어떻게 하여 자연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가라는 문제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크라이스트 쳐치 칼리지에서 학생들에게 자연법에 대해 강의도 하고, 그 주제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라틴어로 저술하기도 하였다. 자연법과 그것에 근거한 정부는 일생 동안 그의 정치철학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철학에 대한 로크의 관심은 데카르트와 가상디의 저작들에 의해 일깨워졌는데 원숙기의 로크의 견해는 여려모로 가상디의 견해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의 중심 주제인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유도한 것은 데카르트의 견해였다. 로크를 위대한 철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주저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검토하고, 우리의 지성이 어떠한 대상을 다루는 데 적합하고 혹은 부적합한가를 고찰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책이 비록 1689년에 출간되었지만 많은 주요 논점들에 대한 상세한 초고는 대부분 이 시기 즉 1660년대 말과 1679년대 초에 써어졌다. 또한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아이작 뉴턴(Isaac Newton)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자연과학적 소질을 계발하였다.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로크 역시 당대 자연과학의 새로운 경험적 방법의 성공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 특히 의학이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1667년 개업 외과의가 되었던 로크에게 1년 후 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농성 간 종양으로 몸져 누워있던 애슐리 경(Lord Ashley)의 외과 수술을 집도하였던 것이다. 이 수술은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었음에도 로크는 이를 훌륭히 완수하여 애슐리 경의 생명을 구하였다. 애슐리 경은 후일 새프츠베리 백작(Earl of Shaftesbury)이 된 인물로서, 이후 30년간 파란만장한 영국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로크의 운명도 자신의 후견인의 격동적인 운명과 함께, 그리고 1683년 새프츠베리가 죽은 후에는 그가 이끌던 광범위한 정치적 집단의 운명과 함께 부침을 거듭하게 되었다. 수술을 계기로 로크는 애슐리 가의 고문 의사직을 제의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런던에 있는 애슐리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로 인해 로크는 정계의 중심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애슐리 가에서 의사 이상의 직분을 떠맡게 되었고, 애슐리 경이 관여하고 있던 많은 정치적 활동에 관해 조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667년에 로크는 『관용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oleration*)을 저술하는데, 그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마도 새프츠베리와 교분을 맺고 있었던 데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복고적인 영국 국교회 주의에 맞서 비국교도에 대한 관용을 새프츠베리가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과 로크가 관용과 출판의 자유를 위해 활발하게 공적·사적 캠페인을 벌인 것 사이에는 동기적·내용적 연관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후일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에서 훨씬 정교한 형태로 제시된 견해의 실체를 이 글을 통해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글의 서두에서 자신의 정치이론의 핵심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관용에 관한 시론』에서 정치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목적이 정부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논문에서 로크는 또한 절대군주제의 관념을, 그것이 왕권신수설에 근거하든 아니면 인민의 양도에 의해 기원한다고 주장되든, 거부하였다.

로크의 주인이자 친구였던 새프츠베리는 찰스 2세의 궁정에서 가장 힘 있는 정치적 인물이자 궁정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반대파의 지도자로서 급기야는 궁정을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특히 찰스 2세의 동생이자 카톨릭 교도인 요크 공 제임스(James Duke of York)를 왕위계승에서 배제하려던 “배척법안”(Exclusion Bill)을 둘러싼 위기가 극에 달하였던 1679년 이후 4년 동안 새프트베리는 왕정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정치운동을 조직, 지도하였는데, 그것은 국왕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강화하고 선출된 하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찰스 2세의 카톨릭 교도 동생인 제임스를 왕위계승에서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기간 잠시 새프츠베리의 비서직을 맡았던 로크는 그러나 곧바로 건강이 악화되어 런던을 떠나 크라이스트 쳤치 칼리지로 돌아갔다. 그후 2년간은

가끔씩 런던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줄곧 옥스퍼드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그 동안 새프츠베리는 찰스 2세의 서자인 몬머스(Monmouth) 공을 옹립하려는 혁명을 시도하였고, 이 권력투쟁에서 찰스 2세가 승리하자 새프츠베리를 포함한 반대자들은 네덜란드로 피신해야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1683년 1월에 세상을 떠났다. 로크의 초기 전기작가들은 새프츠베리의 음모에 로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반란과 혁명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후일 『통치론』으로 출판된 저작도 원래는 새프츠베리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그 당시에 구상,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하튼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와 새프츠베리 간의 인간적·정치적 교분으로 부담을 느낀 로크는 1683년 9월에 로테르담으로 피신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유죄임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1684년 11월에 크라이스트 쳤지 칼리지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그의 직위를 박탈하였다. 이듬해 몬머스 공의 반란이 진압된 후, 로크도 그 음모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중에 사면령이 내려진 후에도 로크는 계속 네덜란드에 남아있기로 결심하였으며, 1688년 명예혁명이 성공하여 윌리엄(William) 공이 영국에 입성하고 찰스 2세가 영국을 탈출하고 난 뒤인 1689년 2월 메리(Mary) 공주를 호송하는 배에 동승하여 귀국할 때까지 그곳에 줄곧 머물렀다.

네덜란드에 머무는 기간 동안 로크의 건강상태는 매우 호전되었고, 따라서 그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구와 저술에 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게 되었다. 관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던 그 시기에 로크는 네덜란드 인 친구이자 신학자인 림보르치(Limborch)에게 라틴어로 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은 1689년 4월에 『관용에 관한 서한』(*Epistola de Tolerantia*)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체재하는 동안 로크는 아마도 이미 여러 해 동안 몰두하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그의 저작인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The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의 집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종교적 관용에 관한 로크의 생각은 이미 옥스퍼드 시절에서부터 가다듬어진 것이지만 이를 출판하게 된 계기는 카톨릭을 신봉하던 프랑스의 루

이 14세가 프랑스와 북유럽의 개신교를 압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1685년 냉트 칙령의 폐지와 프랑스에서 위그노 교도들에 대한 전면적인 종교적 박해, 그리고 네덜란드에 대한 프랑스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직면하여 로크는 『관용에 관한 서한』을 통해 종교적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 글에서 로크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실한 믿음과 참된 경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특정한 방식을 어떤 정부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됨을 역설하고 있다. 로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없으며, 지배자나 국가가 이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한다. 권력의 정당한 행사는 인간 세계의 재화와 이익들을 보호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로크의 사상은 오늘 날에는 거의 상식처럼 들리지만, 신교국이든 카톨릭국이든 상관없이,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간에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던 당시 유럽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종교적 관용과 관련하여 현대의 독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은, 로크에게 종교에서 관용의 권리란 무신론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크가 말하는 관용은 신과 개인간의 관계의 직접성을 옹호하려는 것이지 이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로크에게 무신론자들은 다른 인간 동료들에게 위험을 가져다주는 사악한 운명의 뿌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종교적 관용에 관한 로크의 주장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영국에 귀국한 후 로크는 1689년에 익명으로 『통치론』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간지성에 관한 시론』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로크 자신이 애써 숨기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론』의 저자가 로크일 것이라는 추측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전에 아무 것도 출판한 적이 없으며 새프츠베리의 비서로서 일개 사인(私人)으로 남아 있던 로크는 서양 철학사에 한 획을 긋는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을 비롯한 일련의 저작들의 출판과 더불어 그리고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친한 친구들이 정계의 고위직에 취임함에 따라 마침내 57세 이르러 ‘영광된 만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로크는 여러 가지 주요 공직을 제의 받았으나, 물품세

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관, 무역 및 플랜테이션 위원회의 감독관을 잠시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다. 그는 에식스주 하이 레이버 근처의 오츠(Oates)에 있는 친구 마샴(Masham) 부처의 저택으로 은퇴하여, 그곳에서 1704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은퇴 기 동안 그는 연구와 저술활동을 계속하여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의 개정판을 출간하였으며, 『관용에 관한 서한』을 옹호하기 위해 그 비판자인 옥스퍼드 퀸즈 칼리지의 조너스 프로스트(Jonas Proast)와 장기간에 걸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교육과 경제문제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말년에 로크의 주된 관심사는 신학으로서 1695년에 그는 『기독교의 합리성』(*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이라는 제목의 책을 익명으로 출판하였다. 로크의 최후 저작은 그의 사후 출판된 것으로, 사도 바울의 서한들을 주해한 글이다. 그의 임종에 이르러 마침내 로크는 익명으로 출판된 자신의 모든 저작들에 대해 자신이 저작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였다.

로크의 철학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들 중 청교도적인 것은 결코 없었으나 그의 사유 전체의 고결함과 인간적 깊이를 부여했던 개인적 정체감은 철저히 청교도적이었다. 이러한 기질 때문인지 로크는 자신이 쓴 어떠한 논문도 내버리기를 매우 싫어하였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실제로 그와 교류했던 사람 혹은 그의 동시대인들보다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되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현재 보들레이안 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러브리스 소장본으로서 우리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로크 연보

1632	서머싯 주 렁턴에서 출생(8월 29일)
1642	영국내전의 발발
1647-52	웨스트민스터 학교 재학
1649	찰스 1세의 처형
1649-60	크롬웰 공화정권 수립 및 지배
1652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

- 1655 학사학위 취득
- 1658 석사학위 취득
- 1660 로버트 보일을 만남
- 1660 왕정복고와 찰스 2세의 즉위
- 1660-61 시민행정관에 대한 단편적 논문들을 집필
- 1660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 어 강의
- 1662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사학 강의
- 1663-64 『자연법에 관한 시론』들을 집필
- 1665 브란덴부르크 대사의 비서
- 1667-81 애슬리 경(후일 새프츠베리 백작)의 고문의사이자 비서
- 1668 왕립협회 회원으로 임명
- 1668-75 캐롤라이나 지주 및 귀족 연합의 비서
- 1671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 집필 착수
- 1672 애슬리 경이 새프츠베리 백작의 작위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
로크 역시 성직록 담당서기에 임명
- 1673 새프츠베리 백작, 카톨릭에 반대해 파면됨. 로크 역시 성직
록 담당서기 직위에서 물러남
- 1673-75 무역 및 플랜테이션 위원회 비서
- 1674 의학 학사학위 취득
- 1674 옥스퍼드에서 의학연구원으로 임명
- 1675-79 프랑스 여행
- 1677-78 새프츠베리 백작, 반국왕적 언행으로 인해 투옥
- 1683-89 네덜란드로 망명
- 1684 왕명에 의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교수자격 박탈
- 1688 명예혁명 발발
- 1689 메리 공주를 수행하여 영국에 귀국
- 1689 『관용에 관한 서한』, 『통치론』 및 『인간지성에 관한 시론』
출판
- 1693 『교육에 관한 약간의 성찰』 출판
- 1695 『기독교의 합리성』 출판

- 1696-1700 무역위원회 감독관
 1704 에식스 주 하이 레이버, 오츠에서 사망(10월 28일)
 1705-07 『사도 바울의 서한에 대한 주해』(전6권) 출판

2. 『통치론』 해제: 구성과 논리

여기서는 로크의 *Two Treatises of Government*를 『통치론』이라 번역하였다. 원래 영어 제목에 충실하다면, 『통치이론』(統治二論) 혹은 『통치에 관한 두 논문』이라고 옮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학계의 관행에 따라 『통치론』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국내에서 이 저서를 가장 먼저 번역한 이국찬 교수는 1980년에는 『시민정부론』(연세대출판부, 1980)으로 옮겼으나 곧 『통치론』(삼성출판사, 1982)으로 바꾸었고, 그후 강정인 교수 및 문지영 박사 역시 『통치론』(문학과 지성사, 1996)이란 명칭으로 번역본을 낸 바 있다. 로크의 『통치론』은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발발한 이듬해인 1689년에 출판되었으며, 그해 11월에는 서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치론』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가 중 한 명인 래슬릿이 밝힌 것처럼, 로크는 1679년에 이미 통치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681년 또는 늦어도 1683년경에는 이미 실질적으로 『통치론』의 거의 대부분을 완성한 상태였다(P. Laslett, 1956, pp.40-55). 이렇게 이미 완성된 책을 로크는, 오늘날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다음 해의 신모델을 그 전년도 말에 이미 시장에 내놓듯이, 당시 출판계의 관행에 따라 『통치론』 역시 1690년도를 출판년도로 하여 간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필자는 『통치론』이 1689년에, 또 어떤 필자는 1690년에 출판된 것으로 기술하는 혼란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로크의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여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 첫 번째 논문을 『제1론』(“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으로, 두 번째 논문을 『제2론』(“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으로 부르는 것이 영미학계의 관행이다. 『제1론』은 「로버트 필머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그리고 『제2론』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원래의 계획에 따르면 『통치론』은 하나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었다. 지금의 『제2론』 부분이 맨 앞에 놓이고, 이어 필머에 대한 비판이 그 뒤에 오며, 마지막 부분에는 그 후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어버린 긴 장(章)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필머에 대한 반박이 앞에 놓여 『제1론』이 되었다. 『제2론』의 제1장은 전환부로서 삽입되었는데, 저작이 시의에 적합하도록 여기저기 몇 개의 문장이 첨가되거나 수정되었다. 마지막 장 역시 당시의 사태 진전에 비추어 개정되었다. 『제1론』은 영국 내전 시기의 왕당파 저술가인, 켄트주의 시골 귀족 로버트 필머 경의 정치적 저술에 대한 장문의 비평이다. 필머는 그의 정치적 권위 이론의 비타협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왕당주의 이데올로그들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필머에 대한 로크의 비판을 담고 있는 『제1론』은 오늘날 그 자체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로크 당대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는 주로 『제2론』만이 번역, 출간되었고, 오늘날 영미에서도 『제2론』만을 대학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관행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통치론』은 『제1론』을 제외하고, 로크가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한 바를 담고 있는 『제2론』만을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 뛰어난 로크 연구가 중 한 명인 존 던(John Dunn)은 『제1론』과 『제2론』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기준의 해석을 거부하고 『제2론』 마저도 필머에 대한 공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던은 그 근거로 『제2론』의 주 내용인 정치적 권위,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주장이 필머의 이론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즉 필머에 따르면 통치자들의 권리은 하느님으로부터의 개인적인 선물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소유권 즉 땅과 물질적 재화들에 대한 소유권 만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와 있듯이 하느님은 지구 전체를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었고 모든 정치적 권리와 모든 소유권은 그 선물의 역사적·법적

결과인 것이다. 로크는 이에 맞서 개인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적 권위도 이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제2론』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106-109 참조).

로크의 『통치론』은 1688년 명예혁명을 옹호하고, 다음 세기에 영국정치를 지배하게 된 휘그 당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술된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물론 이것이 이 책이 출간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로크 자신도 서문에서 명시적으로 이 책이 “위대한 복원자인 현재의 윌리엄(William) 왕의 왕위를 확립하고, 그의 권좌를 인민들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하며 [...] 정당한 자연권에 대한 사랑 및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결의에 의해 국가가 예종과 파탄의 위험에 처하였을 때 국가를 구한 영국 인민들을 세상에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로크의 불후의 저작인 『통치론』이 명예혁명 직후에 출간되었고, 로크 자신 역시 서문에서 이 책이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로크가 『통치론』을 저술한 동기는 당연히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로크 연구가들은 명예혁명과 『통치론』 간의 이러한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물론 명예혁명이 『통치론』의 중요한 출판동기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는 이 책의 출간 년도가 너무도 분명히 보여준다. 『통치론』은 명예혁명이 일어난 바로 다음해인 1689년에 출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명예혁명과 로크의 『통치론』 간의 관계는 정치적 사건과 정치사상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적 예로 역사책이나 정치 사상에 관한 책에서 흔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로크 사상에 대한 최근의 주요한 연구들, 특히 1950년대 피터 래슬럿(Peter Laslett)의 연구이래, 명예혁명이 『통치론』의 중요한 ‘출판동기’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로크가 원래 『통치론』을 집필하게 된 주된 ‘저작 동기’는 아니라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현대 로크 연구의 권위자인 래슬럿은 특히 로크와 새프츠베리 백작 간의 긴밀한 관계, 카톨릭 교도인 요크 공 제임스를 왕위 계승에서 배제

시키려는 ‘배척 법안’을 둘러싼 ‘배척 위기’와 이에 대한 새프츠베리 백작 및 로크의 관여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프츠베리가 주도한 휘그 파의 입장은 정치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로크가 『통치론』 초고의 대부분에 대한 집필을 늦어도 1683년에는 거의 완료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와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이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저명한 로크 주석가인 고프(J.W. Gough)는 이와 관련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 한다. 로크의 기본적인 정치적 입장은 새프츠베리 경이나 휘그당과 무관하게 이미 일찌감치 형성되었었고, 청교도적 성장, 새프츠베리 경과의 교분, 망명과 금의환향으로 이어진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 등이 보조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고프는 해석한다. 그리고 로크 정치 사상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독창적이거나 특별히 급진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대에 걸친 정치 사상가들의 저작을 요약하고 다듬었다는 데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J.W. Gough, 1976. pp.vii-xliv 참조).

여하튼 래슬릿에 따르면 로크는 명예 혁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포함한 토리파와 휘그파가 팽팽하게 대립하던 ‘배척 위기’의 와중에서 휘그파의 입장은 정당화하기 위한 저술을 구상하였고, 그 초고에 대한 집필을 늦어도 1683년경에 완료하였다라는 것이다. 다만 ‘배척 위기’에서 새프츠베리를 비롯한 휘그파가 의회에 제출한 ‘배척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폐퇴함에 따라 로크는 불온시 될 것이 당연한 그 저작을 출판할 수 없었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마저 위협을 느껴 네덜란드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래슬릿은 『통치론』이 ‘배척 위기’의 와중에서 사실상 혁명에 대한 요구와 선동으로서 집필된 것이지, 이미 일어난 혁명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집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통치론』은 그 집필 동기에서 있어서 ‘배척 위기’와 관련된 저작이지 명예 혁명과 관련된 저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존던(John Dunn) 역시 『통치론』의 저술 계기 및 동기와 관련하여 『통치론』을 ‘배척 논쟁을 둘러싼 팜플렛’으로 규정한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105 참조).

따라서 『통치론』 집필에 대한 래슬릿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이미 1679

년부터 로크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필머를 반박할 목적으로 통치에 대한 저작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그가 집필한 것은 『제1론』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기술한 『제2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원고를 완성하기 이전인 1680년 어느 시기에 그는 생각을 바꿔 『제1론』에 해당하는 것도 집필하기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그 해 1월에 필머의 『족장론』(Patriarcha)이 출간되었는데, 그 책은 사회계약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세상의 군주들이 아담의 직계 상속자로서 인민에 대해 정당한 지배권을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휘그파와 대립하던 왕 및 토리파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옹호, 보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는 필머의 『족장론』에 대해 조목조목 치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자신이 원래 구상하여 당시 집필하고 있던 부분 즉 『제2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필머의 『족장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로크는 필머의 『족장론』에 대한 상세한 비판을 담고 있는 『제1론』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제2론』과 동시에 집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새로 집필된 『제1론』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로크는 그것에 비추어 『제2론』을 수정하여 재구성하고 광범위하게 재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로크가 1689년 2월 영국에 귀국한 후 『통치론』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같은 8월의 최종순간까지 그 원고를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로크는 『제2론』의 제1장을 『제1론』과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전환부로서 나중에 삽입하였고, 『통치론』을 명예 혁명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시의 적절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몇 개의 문장을 첨가하거나 수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제2론』의 마지막 장 역시 당시의 사태진전에 비추어 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래슬릿은, 전체적으로 서문, 제목과 표지, 『제2론』의 제1장, 제9장, 제15장 전부를 포함하여 25절 정도의 새로운 절들이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절들과 책의 나머지 전체에 첨가된 지엽적인 수정, 보완만이 명예 혁명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래슬릿의 입장이다.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사상은 단순히 영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루소를 통해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에 전해져 애덤스(Samuel Adams)와 제퍼슨(Thomas Jefferson)을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자유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이들의 정신 속에 선명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

『통치론』의 목차

- 제 1 장 서론
- 제 2 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 제 3 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 제 4 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 제 5 장 소유권에 관하여
- 제 6 장 부권(父權)에 관하여
- 제 7 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 제 8 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 제 9 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 제14장 대권(大權)에 관하여
-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리 및 전제적 권리에 관한 총괄적 고찰
-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 제17장 친탈에 관하여
- 제18장 전제에 관하여
-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제2부 『통치론』의 개념 체계도와 개념 연관표

1. 각 장별 개념 체계도

I . 소유권(생명, 자유, 자산)

소유권

재산권

생명

자유

자산

노동

사유물

공유물

소유권의 제한

노동

임금

삶의 편의

부폐

타인에 피해

충분함

양질의 토지

양질의 생계

화폐

축적수단

교환수단

유통수단

자본

이윤

II . 자연상태

자연상태

시민사회

정치사회

전쟁상태
노예상태
자연법
이성
합리성
자유
평등

III. 사회계약론

사회계약
홉스의 사회계약
로크의 사회계약
루소의 사회계약

통치계약
정부계약
권력의 창출
사회계약
권리의 양도

명시적 계약
묵시적 계약
묵계
준계약(Quasi-Contract)
신탁(Trust)
신탁자
수탁자
수혜자
신탁위반
정부의 해체
인민의 저항권

주권
입법부
입법권

행정부
집행권
인민
공동체

IV. 정치사회(시민사회)

정치사회
시민사회
전쟁상태
자연상태
절대군주제
부권
통치
정부
국가
정치 권리
처벌권
사회계약
동의
협정
다수결
법치
공정한 재판관

V. 정부형태와 정부의 구성

정부 형태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정부의 구성
삼권분립
입법권
최고의 권리
행정권

집행권
연합권
외교권
대권
정복
찬탈

VI. 인민의 저항권(정부의 해체)

사회의 해체
정부의 해체
입법부의 변경
최고 집행권자의 태만
왕의 자격상실
신탁 위반
인민의 저항권
다수의 신탁철회
반란
혁명
시민불복종

2. 각 장별 개념 연관표

I. 소유권(생명, 자유, 자산) 개념 연관표

Relation	Topic 1	Topic 2
저자-저작 관계	로크	『통치론』
저자-저작 관계	필머	『족장론』
동일 관계	소유권	재산권
전체-부분관계	소유권	생명 자유 자산
전체-부분관계	소유권	경제적 재화
대립 관계	사유물	공유물

Relation	Topic 1	Topic 2
외연 관계	소유권의 제한	노동 삶의 편의(부패) 타인에 피해(양질의 토지)
행위-대가 관계	노동	임금
외연 관계	충분함	양질의 토지 양질의 생계
전체-부분관계	화폐	축적 수단 교환 수단
동일 관계	교환수단	유통수단
전체-부분 관계	자본	이윤
사실-권리 관계	점유	소유
함축 관계	자기보존권	소유권
목적-수단 관계	재산의 보전	정부 구성
소유자-소유대상 관계	개인	생명권
원인-결과 관계	노동	사유물
대체 관계	양질의 생계	양질의 토지
계약-계약의 대상 관계	목계	화폐
전체-부분 관계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
전체-부분 관계	자연권	소유권
이론-주장자 관계	소유지향적 개인주의	맥퍼슨
전체-부분 관계	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
이론-주장 관계	사유재산권론	로크
대립 관계	공동 소유	개인 소유

II. 자연상태 개념 연관표

Relation	Topic 1	Topic 2
동일 관계	시민사회	정치사회
역사적 선후 관계	자연상태	시민사회
논리적 선후 관계	자연상태	시민사회
대립 관계	시민사회	전쟁상태
전체-부분 관계	자연상태	전쟁상태 노예상태

Relation	Topic 1	Topic 2
동일 관계	자연법	이성
동일 관계	자연상태	공권력의 부재
내포 관계	자연상태	1. 하느님이 인간들을 세상에 둔 조건 2.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 상태
전체-부분 관계	자유	정치적 자유 자연적 자유
필요조건의 관계	법률	자유
내포 관계	자연법	1. 하느님이 인류에게 준 공통의 규칙 2. 인간에 대한 신의 의지
가능성-현실성 관계	권리의 보유	권리의 집행
양도자-양도대상 관계	개인	권리 집행권
피양도자-양도대상 관계	정부	권리 집행권
내포 관계	첫 번째 자연상태	이성과 자연법에 따라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
내포 관계	두 번째 자연상태	권리침해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상태
근거-피근거의 관계	자연법	국내법 실정법
내포 관계	처벌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권리
전체-부분 관계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외연 관계	자연상태	역사적·사실적 자연상태 논리적·가정적 자연상태
내포 관계	노예상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아래 있는 상태
개념-예시 관계	노예상태	전쟁포로
합리성의 유-무 관계	유산자	무산자

III. 사회계약론 개념연관표

Relation	Topic 1	Topic 2
이론-주장자 관계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외연 관계	계약	사회계약 통치계약
내포 관계	사회계약	오직 사회만을 창출하는 계약
내포 관계	통치계약	권력을 창출하는 계약
동일 관계	통치계약	정부계약
행위-행위내용 관계	사회계약	권리의 양도
외연 관계	계약	명시적 계약 묵시적 계약 준계약
내포 관계	명시적 계약	어떤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로 하는 분명한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 계약
대립 관계	신탁자	수탁자
동일 관계	정부	수탁자
동일 관계	인민	신탁자
전체와 부분	신탁위반	정부해체
동일 관계	정부해체	인민의 저항권
권리-권리주체 관계	입법권	입법부
권리-권리주체 관계	집행권	행정부
권리-권리주체 관계	저항권	인민
이론-주장자 관계	신탁이론	바커
이론-주장자 관계	신뢰이론	던
저자-저작 관계	루소	『사회계약론』
사상-사상의 뿌리 관계	사회계약론	스콜라철학 로마법 성경
종교-정치 관계	교회	정부
근거-피근거 관계	자연법	사회계약
대립 관계	역사성	선험성
내포 관계	헌법	단 한 번의 유일한 계약
저자-저작 관계	홉스	『리바이어던』

IV. 정치사회(시민사회) 개념 연관표

Relation	Topic 1	Topic 2
동일 관계	정치사회	시민사회
대립 관계	정치사회	전쟁상태
대립 관계	정치사회	자연상태
대립 관계	정치사회	절대군주제
동일 관계	통치	국가
동일 관계	통치	정부
동일 관계	정치권력	처벌권
동일 관계	사회계약	동의
동일 관계	사회계약	협약
필요조건의 관계	명시적 동의	시민사회의 성원
전체-부분 관계	시민사회의 성원	자산 소유자
내포 관계	정치권력	처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
외연 관계	정치권력	입법권 행정권 연합권 대권
동일 관계	정치권력의 임무	자연법의 준수
대립 관계	수평적 권력관	수직적 권력관
권위의 유-무 관계	정치사회	절대군주제
정상-퇴락 관계	자연상태	절대군주제
외연 관계	법률제정	입법권 조세징수
원인-결과 관계	동의이론	무정부주의
내포 관계	부권	양친이 자식들의 복지를 위해 이들을 다스리는 권력
동일 관계	부권	친권
내포 관계	전제적 권력	다른 사람에 대한 절대적, 자의적 권력
동일 관계	노예상태	전쟁상태
크고-작음의 관계	전제권력	통치권력
크고-작음의 관계	통치권력	부권

Relation	Topic 1	Topic 2
외연 관계	의사결정 방법	만장일치 다수결 일인 지배자의 결정 합의제 소수의 뛰어난 자의 결정 2/3이상 찬성
동의의 유-무 관계	정당한 지배	부당한 지배
기원-결과 관계	사회계약	정치사회

V. 정부형태와 정부구성의 개념 연관표

Relation	Topic 1	Topic 2
외연 관계	정부형태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전체-부분 관계	군주정	세습군주정 선거군주정
외연 관계	삼권 분립	입법권 행정권 연합권
국내-국외 관계	행정권	연합권
전체-부분 관계	행정권	사법권
동일 관계	입법권	최고의 권력
동일 관계	행정권	집행권
동일 관계	연합권	외교권
내포 관계	대권	공공선을 위한 초법적인 행정권의 재량
내포 관계	정복	외국에 의한 권력획득
내포 관계	찬탈	내내적 권력획득
국내-국외 관계	찬탈	정복
이론-주장자 관계	삼권분립론	몽테스키외
목적-수단 관계	재산보호	법률
동일 관계	정복	정당한 전쟁의 결과
권리-범위 관계	정복	전쟁포로의 생명

Relation	Topic 1	Topic 2
대립 관계	정치사회	무정부상태
정당성 유-무 관계	정의로운 정복	찬탈
전체-부분 관계	천부인권	인신에 대한 권리 상속권

VI. 인민의 저항권(정부의 해체) 개념 연관표

Relation	Topic 1	Topic 2
동일 관계	인민의 저항권	정부의 해체
전체-부분 관계	사회의 해체	정부의 해체
외연 관계	정부의 해체	입법부의 변경 최고집행권자의 태만 왕의 자격상실 신탁위반
동일 관계	인민의 저항권	다수의 신탁철회
동일 관계	인민의 저항권	반란
동일 관계	반란	혁명
전체-부분 관계	인민의 저항권	시민불복종
내포 관계	시민불복종	정부의 전복 아닌 특정 법이 나 통치행위에 대한 저항
원인-결과 관계	외국군대의 정복	시민사회의 해체
전체-부분의 관계	입법부의 변경	법(헌법)의 교체
전체-부분의 관계	입법부의 변경	인물(대표자)의 교체
행위-판단자 관계	신탁위반	인민
동일 관계	하늘에 호소	인민의 저항권
동일 관계	하늘에 호소	역사의 심판
외연 관계	군주의 권력남용	1. 입법부의 의지를 군주의 의지로 대체 2. 군주에의한 입법활동방 해 3. 군주에의한 선거제변경 4. 외국에 인민을 예속

제3부 『통치론』의 주요 개념 분석

서론: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이론

로크의 정치이론에는 근대의 자유민주주의자가 원하는 것이 거의 모두 들어 있다. 합의에 의한 정부, 다수의 지배,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관용, 사유재산의 신성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권과 합리성에 대한 가정까지 근대 서구의 정치질서를 이론적으로 근거지운 모든 중요한 개념과 원리가 로크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로크 정치이론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정치 권력의 정당성 문제 즉 무엇이 1차적으로 통치를 정당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피통치자의 동의를 중시하는 접근법이 있고, 둘째, 신민과 통치자들이 어떻게 서로간의 관계를 해석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신뢰 혹은 선택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 셋째, 어떻게 인간들이 경제적 재화를 소유할 자격을 갖추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자격의 범위와 한계들에 대한 설명에 비중을 둔 소유권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 넷째, 인간 권리의 상이한 유형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내에서의 권리와 국가 내에서의 권리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에 비중을 둔 접근법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로크가 소유권에 부여한 중심적인 비중에 근거해서 로크의 정치 이론을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옹호론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C.E. Vaughan, 1925, H.J Laski, 1920 등).

이 입장은 자연 상태의 개인이 이를 벗어나 합의를 통해 공동의 규칙과 법을 받아 들여 정치 공동체를 결성한다는 입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로크의 주장이 갖는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정부의 권한을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입장의 난점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 이해할 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시민사회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서 사회 계약이 모든 사람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적절한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

이다. 또 다른 입장은 로크가 말하는 다수의 지배에 초점을 맞추어 로크가 결코 개인주의자가 아니고, 오히려 개인의 목적을 사회에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Willmoore Kendall, 1941. pp.103-106). 즉 신이 인류에게 준 공유재산에 대한 로크의 강조나 인류 공동체에 대한 잣은 언급에 기초하여 로크의 개인주의에는 사회주의적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도 있다(M. Forsyth, 1993. p.200 참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배가 로크가 명백하게 지키려고 했던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옹호 이론과 양립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성이 크다.

존 던(John Dunn)은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사상의 핵심을 주로 부정의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으로 보고, 『통치론』이 최후 수단으로서 혁명권을 주장하기 위해 계획된 저작으로 해석한다(에네스트 바커 외, 1995. p.101 참조). 존 던은 그 근거로서 『통치론』의 정확한 집필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로크가 관여했던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휘그 당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실천적 필요에서 저술되었다는 저술 배경, 특히 배척 논쟁을 둘러싼 숨막히는 권력 다툼에서 왕을 비롯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시민들의 능동적 불복종의 권리를 옹호해야 했던 상황을 제시한다. 존 던은 특히 최근 이삼십 년간의 로크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 즉 첫째, 로크는 1683년 늦여름 조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향했던 그 시점에 이미 1689년에 그가 출판했던 『통치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의 저서를 집필해 두었다는 점과 둘째, 로크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통치론』에 포함된 상이한 구절들을 썼었고, 따라서 이 텍스트는 새프츠베리의 정파가 이 논쟁의 과정에서 채택했던 많은 변화된 입장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처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실과 자료에 대한 개인적 연구를 통해 던은 저항권과 관련하여 『통치론』에서의 로크의 입장이 그 이전과 180도 달라진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즉 던에 따르면 로크는 1660년의 『통치에 관한 두 편의 소논문』(*The Two Tracts on Government*), 그리고 1667년 『관용에 관한 시론』(*The Essay on Toleration*)에서 분명히 주권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신민들의 의무는 이 명령들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명령들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명령들이 유래한 권위를 최소한 인정하고, 그 명령들을 내린 장본인 즉 왕을 공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강제로 그 명령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로크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정치적 권리가 인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정부의 동요와 해체를 금하는 하느님의 법에 의해 규정되며, 모든 인간은 선한 양심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정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당시 로크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John Dunn, 1969. p.49). 참조 그러나 그 이후의 정치적 경험 특히 배척 논쟁을 둘러싼 정치 투쟁의 경험을 거친 후 로크는 수동적 복종에 대한 공언으로부터 부당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저항권의 옹호로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시민들이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보존을 위한 판단을 통치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에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러한 권리의 원천은 하느님의 법, 즉 모든 인간의 권리가 기초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간의 의무가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자연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맥퍼슨(Macpherson)은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는 로크 사상에 내재된 모순과 모호성에 주목한다. 즉 왜 로크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자연상태는 합리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지를 해명하지 않는다면 로크의 정치 사상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모순을 낳게 한 비밀을 풀 때만이 로크 정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로 맥퍼슨이 제시하는 것은 로크의 정치 이론에는 많은 사회적 가정들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로크 정치사상의 사회적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입장이기에 소유권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I . 소유권(생명, 자유, 자산)

1. 소유권의 정의

로크 정치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property(소유권 혹은 재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로는 “생명, 자유, 자산” (life, liberty, estate)을 총칭하며, 협의로는 “경제적 재화”를 지칭한다(123절 참조). 광의의 의미이건 협의의 의미이건 소유가 인간의 자연권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의 보존이 지고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 로크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천부적 소유권에 대한 이론을 로크 정치 사상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신을 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재산을 보전’ (124절)하기 위함이라는 로크의 언급 때문이다. 이는 인간에게 천부적 재산권이 있으며, 이 권리가 시민사회나 정부의 존재보다 앞서거나 적어도 독립적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자연권에 속하는가? 로크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권리인 소유권을 함축한다. 즉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고기와 음료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도 인간의 생존은 소유권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프(Gough)는 로크가 점유(possession)와 소유(property)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생존을 위한 음식이나 토지에 대한 점유의 권리가 곧 소유의 권리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고프는 특정한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구분되는 법에 선행하는 자연권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설사 이러한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로크의 주장처럼 점유 즉 취득이나 점거에 의해 확보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소유는 국가의 법률과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장될 때에만 존재하고, 따라서 소유권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 194-195 참조).

그런데 로크 정치 이론이 현대 정치 이론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이 이론이 소유권을 자연법과 자연권에 입각해서 옹호하면서도, 결국에는 소유권으로부터 모든 자연법의 한계를 제거하여 무제한적인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맥퍼슨, 1990. p.229). 고프(Gough)는 로크의 정치 이론이 결과적으로 당시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자연법의 은총을 부여한 점은 인정한다. 이로 인해 로크는 가난한 이웃의 희생을 대

가로 하는 이기적인 탐욕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고프에 따르면 이러한 비난은 로크가 살았던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당시에는 극심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간의 삶 본연의 불가피한 특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로크의 정치 이론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195-196 참조).

한편 소유권(재산권)의 문제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의 핵심은 누가 어떤 것을 정당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소유란 일차적으로 소유주로서의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 대상과 맺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에 의해 타자가 그것의 사용이나 수익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유는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에서도 단순히 사실 관계가 아니라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된다. 즉 누가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대상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자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대상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의 원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권리 주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주장이 사회적 관습이나 국가의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럴 때에만 그는 어떤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의미 있게 주장할 수 있으며, 그것을 탈취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한 소유 주장이란 이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될 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물리적 강제력은 한 정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사적 폭력이 아니라 합법화된 공적 폭력 즉 법에 의한 공권력의 형태로 주어져 왔다. 소유권 개념이 근대적 개념인 이유는 이 개념이 근대에 와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근대 사회의 조직과 그 역사적 전개가 소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는 근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소유권 개념이 서양 근대 사회의 역사적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구시대 지배 세력의 몰락과 신흥 부르주아 세력의 부상이라는 정치적 지배 세력의 교체와도 연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산력의 증대와

시장 자본주의의 성립이라는 근대 사회의 또 다른 핵심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김남두, 1993. pp.6-9. 참조).

2. 소유권의 기원

좀더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로크에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으며 다른 권리들은 이 전제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어 나온다. 두 가지 전제란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7절)는 것과 2) “신이 그것(땅, 대지)을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것” (25절) 이 두 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다. 그리고 인류에게 공유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자신의 것을 보탬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로크는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공유물로 주신 것 또는 자연이 제공하는 것은 일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는 짐승들은 자연발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26절)

여기서 이들이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있는 한, 그 누구도 타인에 대해 독점적인 사적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이 이용되도록 주어진 이상, 그것이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데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로크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노동이다.

“노동이야말로 그것들(사유물)과 공유물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노동이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인 자연보다 더 많은 무엇을 그것들에 첨가한 것이

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그의 사적인 권리가 된다.” (28절)

“실로 모든 사물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든 담배나 사탕수수를 심고, 밀 또는 보리의 씨를 뿌린 1 에이커의 땅과 아무런 경작도 없이 방치된 동일한 크기의 공유지간의 차이를 고려해 보라. 그러면 그는 노동에 의한 개량이 가치의 훨씬 더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유용한 토지 생산물 중에서 10분의 9가 노동의 결과라고 말해도 그것은 대단히 낮추어 잡은 계산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사물이 우리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순전히 자연에 속하는 것과 노동에 속하는 것들에 관한 몇 가지 비용들을 계량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100분의 99가 전적으로 노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0절)

그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공유물을 개인의 소유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유물의 주인인 모든 인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로크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만약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공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바꿀 때마다 그런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인간은 신이 모든 것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로크의 답변이다. 공유지에서 소유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공유물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일이 없다면 공유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을 떼어 가지는가는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의 말이 뜯어먹는 풀, 내 하인이 빼어낸 잔디의 뗏장,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채취한 광물은 다른 사람의 양도나 동의 없이도 나의 소유물이 된다. 나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을 원래의 공유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 설정한다.” (28절)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다.” (29절)

심지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토끼도 원래는 그의 것이 아니며 아직

완전하게 그의 것이 되지 않았지만 일차적으로 그 사냥꾼의 것으로 간주된다.

“여전히 공유물로 간주되고 있는 야생동물이고 어떤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잡기 위해서 그것에 그토록 많은 노동을 지출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공유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분리시켜 소유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0절)

로크는 이러한 소유권의 기원을 너무도 당연시 여기며 이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유권의 기원은 이성의 법 즉 원초적 자연법에 의해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유권은 인간의 삶의 조건에 따른 필수적인 것이다. 공동 소유냐 개인 소유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개인과 인류의 보존 즉 생존이며 세계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과 편익을 제공한다면 이것이 사유를 통해서 이든 공유를 통해서 이든 무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로크를 사유재산권의 절대적 옹호자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일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로크에게 사유재산권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며 정부가 세워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사유재산권은 어디까지나 생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이지 그 자체 가치를 가지는 독자적 권리 는 아닌 것이다. 굳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생명권에 한정시켜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던(Dunn)의 로크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던에 따르면 로크에게 ‘소유’는 인간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이되, 소유 자체의 절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주를 위시한 지배자의 권리 즉 신민들의 물질적 소유물을 그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채택된 용어임을 분명히 한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115-116 참조). 『통치론』의 몇몇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로크에게 육체적 생존의 권리라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 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다.

자신은 모든 인간에게 그가 달리 생존할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다른 인간이 가진 많은 것으로부터, 그를 극도의 결핍으로부터 지켜낼 만큼의 것에 대한 권리를 준다(『제1론』, p.42).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로크에게 재산권을 비롯한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따라서 로크의 이론을 단지 재산권의 옹호이론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일면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던에 따르면 오히려 초점은 군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에 두어야 한다. 즉 로크가 노동에 기반하여 소유권의 권리를 정립한 이유는 이러한 논리가 군주의 도전에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를 준 것은 인간의 관습이 아닌 하느님 즉 자연권인 반면, 군주가 신민에게 갖는 권리는 단지 인간의 관습에 불과한 것이기에 군주는 신민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보다 하느님이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임의로 신민들의 소유물을 처분하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로크에게 필요했던 것은 소유권의 절대성 즉 왜 모든 신민이 그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하고도 명백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단지 왜 사적 소유가 정당한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조차도 대항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크의 소유권 이론에 내재하는 이중성 혹은 모호성은 순전히 인간적인 고안물인 화폐가 등장하여 화폐 교환에 기초한 권리가 노동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권리들과 서로 충돌하여 소유의 도덕성이 흐려짐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자본주의 생산의 정당화와 거부 속에서 뒤엉켜 전개되어온 노동 가치론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로크의 애매성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119 참조).

3. 소유권의 제한(노동, 편의, 남에게 피해)

소유권의 기원이 이러하다면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공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로크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바로 그 자연법이 또한 소유권에 제한을 가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단서조항이라고 알려진 몇 가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만나게

된다. 1) 그 첫 번째는 노동의 한계이다. “그 자신의 근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 (34절) 이상은 안 된다. 특히 소유권의 주된 대상이 대지에서 나오는 과실 또는 거기 사는 짐승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 자체가 되는 상황에서 “한 인간이 개간하고, 파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의 범위가 된다(32절). 이처럼 정당한 소유가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산출할 수 있는 양에 제한되는 것은 로크의 논리전개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연의 산물을 혼합되어 어떤 것을 자신의 재산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 ‘뿐이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는 삶의 편의 즉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이다. 아무리 자신의 노동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썩히거나 파괴될 정도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31절). 3) 이는 두 번째 제한과 연관되면서도 구분되는 것으로 소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즉 토지든 물이든 다른 사람(나머지 인류)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는 정당화된다. 여전히 많은 토지가 남아 있고, 아직 토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남아 있다면, 토지를 개량하여 그 일부를 수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물을 잔뜩 폐마셨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33절)

로크가 소유의 한도를 생각할 때 그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의 노동도 모든 것을 정복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 또한 그가 향유하여 소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이웃에 피해가 될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의 이웃은 (타인이 그 자신의 몫을 취한 후에도) 여전히 수취되기 전과 마찬가지고 충분하고도 커다란 소유물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6절)

만일 로크가 여기서 멈추었다면 그의 사상은 제한적인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소유와 관련

해서 로크 이론이 갖는 중요성은 소유에 대한 자연적, 즉 천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연적 제한을 넘어서는 무제한적 소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로크는 이러한 제한을 어떻게 넘어서는 것인가?

4. 소유권의 제한 철폐

위에서 말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소유권의 제한은 거대한 공유지에 소수의 사람들이 살던 최초의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담이나 노아의 자식들이 세계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 아니면 몇몇 가족이 거대한 미국 대륙의 어느 부분을 개간하여 산다고 할 때 이미 언급한 소유권의 제한은 유효하다. 즉 그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소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취한 소유물로 인해 여타 인류가 피해를 보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류는 이들의 노고로 은혜를 입는 셈이다. 근면을 통해 수확량을 늘이고 토지를 비옥하게 하여 인류의 생존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동에 의해 땅을 수취하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다.” (37절)

그런데 목계에 의한 화폐의 도입은 이전의 정당한 소유에 대한 자연적 제한을 제거한다. 1) 먼저 노동의 제한의 경우를 살펴보자. 개인적 소유에 대한 이 제한은 제거하기가 가장 힘들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로크가 어떤 소유든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노동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개인의 노동량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크는 이러한 제한을 화폐의 도입을 통해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 비밀은 임금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로크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연과 혼합했을 때 ‘이 노동은 의심할 바 없이 노동한 사람의 재산 ‘이 된다는 것과 임금을 대가로 해서

노동력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임금관계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임금으로 화폐를 주고 타인의 노동을 일시적으로 구매한 사람에게 타인의 노동은 자신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그의 소유가 된다. 재산이란 재산을 즐기고 사용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분하고 교환하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로크가 보기에 사람의 노동력은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자신의 재산이기에,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자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시간 동안 그가 수행할 용역을 그가 받을 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노동이 투하되어 생겨난 산물은 모두 그 노동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리하여 소유가 특정인의 노동의 한계에 구속받지 않고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서 논란을 일으키는 한 가지 문제는 과연 로크가 임금관계를 자연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는가 하는 것이다. 로크가 임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의 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로크가 어디까지나 임금관계를 자연상태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로크에게 소유권은 시민 사회 혹은 정치 사회 성립이전의 자연상태에서의 권리 즉 자연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크가 임금관계를 자연상태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추론은 그가 어떻게 자연권과 자연법을 시민 사회와 연관 지우는지를 보면 좀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협정이나 동의를 통해서 자연권과 다른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신들의 자연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가지던 권력을 공동체의 권위에 양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민사회는 자연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시민 사회는 자연법과 자연권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결성된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기구가 아닌 것이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상태에서 보장된 것이며, 시민사회를 통해 새롭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는 자연법을 능가할 수 없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

유할 수 있고, 타인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것이 자연상태에서 정당하듯이 시민사회에서도 정당한 것은 자연법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계약은 아무런 새로운 개인적 권리를 창출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시민사회에서는 정당하므로 그것은 자연권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을 주고 한 개인의 노동력을 양도받는 것이 시민사회에서는 정당하므로 그것은 자연권으로 생각되어져야만 한다.” (맥퍼슨, 1990. pp.252-253)

2) 다음으로 편의의 제한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이 소유하게 된 것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가 소비하기 전에 과일이 썩거나 사슴고기가 상하게 되면 그는 공통의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삶의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토지를 개간하여 여기서 수확물을 얻는다면 이는 그의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가축을 기르고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수확한다면 이에 대해 그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가 울타리를 친 토지에 씨가 뿌려지지 않거나 혹은 그가 심은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지만 수확되지 않고 그대로 시들어 버린다면, 또는 수확은 되었으나 제대로 저장되지 않아 썩는다면, 저장되었으나 소비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황무지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할 다른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마모되거나 썩지 않고 지속하는 황금색의 작은 금속 조각이 커다란 고기 덩어리 또는 곡물 한 더미만큼 가치를 가진다고 인간이 합의” (37절) 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또는 부패되기 이전에 그 산물을 이용하는 제한이 화폐의 도입으로 제거되는 것은 노동 제한의 제거보다 훨씬 용이해 보인다. 금과 은은 썩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화폐를 무제한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하다. 이를 통해 토지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사람은 그가 스스로 그 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정당하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분을 교환해서 금과 은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금과 은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축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금속들은 소유자의 손에서 썩거나 부패되지 않는다.” (50절)

화폐로 전환된 수확물은 더 이상 썩지 않고 시간과 자연의 침해에 대항해서 한결같은 자신의 모습을 유지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다른 물품으로 바꿔어 삶의 편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소유를 제한했던 자연적 한계들은 화폐의 도입과 더불어 철폐되고 만다. 로크에 따르면 어떤 이가 정당한 소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가진 소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상해서 무익한 것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로크는 화폐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화폐의 도입은 인간의 욕망 확대와 연관된다. 이에 따라 불평등한 재산을 정당하게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당성이 동시에 열린다(캐롤 페이트만, 1995. pp.249~250 참조). 그런데 왜 인간은 화폐의 도입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가? 로크가 화폐의 도입과 함께 생겨난다고 본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자 하는 욕구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겠다. “화폐는 인간이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게 되었다” (47절)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의 자연성 성질과 인간의 주관적 만족에 의존하는 사용가치의 한계성은 오로지 교환가치만을 갖는 화폐의 도입 즉 잠재적으로 어떠한 사용가치로도 전환될 수 있으면서도 사용가치가 가진 자연적 한계에 전혀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상징물의 도입과 더불어 철폐되는 것이며 이는 무제한적인 재산 소유와 자본 축적의 정당화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 다시 말해 화폐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자신의 필요에 충분한 소비를 넘어선 것을 축적하려는 욕구는 단순히 구두쇠의 저축욕구가 아니다. 그것은 교환 가치 즉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돈을 충분히 저축하는 것이다. 소비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의 소유를 옹호하는 것은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품의 판매를 통해 화폐를 모으게 하는 상업의 활성화이다. 더 나아가 토지와 화폐를 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 로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로크에게서 화폐가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되, 화폐의 목적이 단지 소비를 위해 생산된 사물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물물교환의 범위를 넘어선 소비를 위해서 상품생산자들 사이의 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것, 경제학의 용어로 유통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로크가 말하는 화폐의 내용은 자본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다. 이는 로크가 화폐와 토지를 연결하고 여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의 기능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일면적으로만 봤을 때 토지는 자연적으로 새롭고 이익이 되는 것과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한다. 그러나 화폐는 불모의 것으로서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화폐가 토지의 임대와 유사하게 연수입을 놓게 되는가? 그것은 불평등하게 소유한 자들간의 계약에 의해서이다.

“화폐는 계약에 의해 그 이윤을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으로 전달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한 것을 위반하는 것은 불평등한 화폐분배이다. 불평등은 토지에서나 화폐에서나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 왜냐하면 토지의 불평등한 분배는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임대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화폐의 불평등한 분배는 나를 화폐에 대한 임대인으로 만든다.” (맥퍼슨, 1990. p.238)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로크가 화폐를 단순히 거래의 매개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서 보았다는 것이다.

한편 맥퍼슨의 이러한 로크 해석에 대해 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즉 로크의 정치 이론이 임금 노동을 위시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유 양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맥퍼슨의 해석에 대해 던은 비록 로크에 따를 때 하인의 유급 노동의 결과가 그의 주인에 의해 소유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영국의 경제 관계의 상당히 중심적인 모습이었던 것에 대한 비교적 무심결에 나온 로크의 인정만 가

지고, 로크가 임금 노동의 중심적 역할, 자본주의 생산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118 참조). 이러한 던의 지적은 로크의 소유권 이론이 재산의 공유설 즉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겨들을 만하다. 더구나 던의 지적은 맥퍼슨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포함된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맥퍼슨에 따르면 사실상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자본으로서의 기능에 종속된 것으로 보이는 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농업, 공업, 상업의 목적은 자본의 축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의 목적은 그 소유자에게 소비를 위한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넣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화폐의 도입과 더불어 생겨나서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으로 로크가 파악한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인간의 욕구’나 ‘그의 가족의 사용과 소비에 충분한 공급을 넘어서서 소유를 확장하려는 욕구’는 구두쇠의 축재도, 단순하게 좀더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상품을 사용하려는 욕구도 아닌, 토지와 화폐를 자본으로서 축적하려는 욕구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3) 타인을 위해 충분한 양을 남겨놓은 경우 즉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소유라는 것은 상하고 썩는 것과 연관이 있다. 상하고 썩게 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들이 상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는 그것을 이용한 셈이다. 만약 그가 또한 1주일이 지나면 썩었을 법한 자두를 주고 1년 내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호두와 교환하였다면, 그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셈이다. 그의 수중에서 어느 것도 무용하게 상하지 않는 한, 그는 공동의 자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재물의 일부분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만약 그가 그의 호두를 주고 색

같이 마음에 드는 한 조각의 금속을 받는다면, 또는 조개껍질을 받고 그가 키우던 양을 주거나, 반짝이는 자갈 또는 다이아몬드를 받기 위해서 양모를 준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자기 곁에 평생 동안 보관하고 있다면, 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셈이며 따라서 그는 그러한 내구재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 (46절)

모든 소유는 타인을 위해 충분한 양질의 것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소유의 제한이 화폐의 도입으로 철폐되는 것은 화폐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지만 화폐의 도입을 통한 시장경제와 자본축적의 논리와도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자본으로서 토지의 활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즉 비록 타인을 위해 남아 있는 충분한 양질의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소유된 토지의 더 나은 생산성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분을 메워 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것은 전체 생산의 증가가 충분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것을 의미한다. 그 증거는 모든 토지가 소유되고 완전히 이용되는 지역의 최저생계수준이 토지가 소유되지 않고 충분히 경작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낮다는 사실이다.

“아메리카 인들의 몇몇 나라들처럼 이 점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례들은 없다. 이들 나라들은 땅은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만 삶의 편익에 있어서는 빈곤하다. 이들 나라에 자연은 다른 어느 민족들에게보다도 풍성한 자원, 곧 식품, 의복 및 생활의 기쁨을 주는 것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마련해주었지만,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그 땅을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향유하는 편익의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광대하고 비옥한 영토의 왕이 영국의 일용 노동자보다 의식주에서 훨씬 못살고 있다.” (41절)

이런 식으로 사적 소유는 타인을 위해서 남겨진 총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 충분한 양질의 토지가 없다 해도 타인을 위해서 충분한 양질의 생계가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충분함의 제한을 넘어서게 된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제한 조건이긴 하되 다른 방식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아무도 타인을 위해서 충분한 양질의 것을 남기지 않고는 대지의 산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원래의 제한은 각각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소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이제 충분한 양질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다.

금이나 은이 상징하는 화폐의 가치는 그 금속의 유용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인간들의 동의에 그 가치의 크기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암묵적 합의에 의한 화폐의 도입은 위에서 말한 소유를 제한했던 조건들을 철풀하여 무제한의 재산 소유를 정당화시켜 준다. 빈부의 차이는 여기서 비롯되며 로크에 따르면 이는 정당하다.

“사람들은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한 인간이 그 자신이 그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잉여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발견하였고,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 금속들은 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사유재산 제와 같은 사물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아무런 협정도 없이 단지 금과 은에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의 사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50절)

결론적으로 말해 타인을 위해 충분한 양질의 것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화폐 도입의 필연적 결과에 의해 함축된 암묵적 동의와 모든 토지가 소유되고 이용되는 곳에서의 토지가 없는 자들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곳의 누구보다도 높다는 것에 의해 정당화된다.

II. 자연상태

1. 자연상태의 정의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흡스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주된 오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흡스에게 자

연상태는 ‘격정과 적의에 의해 산출된 폭력적 충돌의 상태’이며, 이러한 치명적 위험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철저하게 반사회적인 성향을 극복하게 하여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게 한다. 반면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좀더 온건하고 이성적인 상태이며,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반사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흡스와의 차이는 자연상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금방 해소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상태와 관련해서 로크를 흡스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점과 대조점을 찾아내는 식의 일반적 묘사는 로크가 ‘자연상태 ‘개념을 통해 진정 하고자 했던 의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흡스처럼 인간의 성향과 태도에 대한 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흡스가 ‘자연상태 ‘의 개념을 통해 공권력의 부재 상황 즉 정치적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면, 로크는 ‘자연상태 ‘의 개념을 통해 ‘하느님 자신이 인간들을 세상에 둔 조건 ‘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이에 근거해서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한 마디로 말해 로크의 자연상태 개념은 흡스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흡스의 자연상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술이라면 로크의 자연상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인 것이다.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구축함에 있어 로크는 흡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평등하고 분리된 개체로 살고 있는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로크 정치 이론의 개인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사막의 기둥 위에 은거하고 있는 개인의 형상 ‘이다. 이처럼 고립된 개인의 형상이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과 『통치론』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상징이다. 이러한 비유는 거슬러 올라가 서양 사상의 원류 중 하나인 『구약 성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등장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반면 흡스에 있어서 각 개체는 타인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연권을 주장하는 데 반해, 로크는 각 개체가 자신의 의지에 대한 제약, 특히 동료에게 속하는 재산권과 각자 모두에게 속하는 자연법 위반에 대한 처벌권이라는 두 개의 제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로크 정치철학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에 대한

규정이다. 그는 이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정부,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도출해 낸다. 흡스가 자연상태의 인간을 이기적이고 투쟁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로크는 자연상태의 인간을 보다 온화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로서 “평화, 선의, 상호부조 및 보존의 상태” (19절)를 말한다. 또한 로크는 자연상태의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묘사한다.

“자연상태란 사람들이 타인의 혀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다” (4절)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차별 없이 자연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 (4절)는 점에서 평등한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자유란 방종과 구분된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이성의 산물인 자연법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자유의 상태’ 이지 ‘방종의 상태’ 가 아니다(6절). 로크에게 자유란 자연적 자유이든 정치적 자유이든, ‘모든 사람이 어떠한 법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내키는 대로 행할 수 있음’ 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크가 의도하는 ‘자연적 자유’ 란 ‘지상의 그 어떤 우월자로부터의 자유 즉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것’ (22절) 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조차도 인간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자연법을 갖는다는 점이 흡스와 구분되는 로크의 자연적 자유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자유란 이성 즉 독자적 판단 능력에 의존하며,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자연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존 고프, 1995. pp.192-193 참조). 그리고 로크에게 ‘정치적 자유’ 란 인간이 어떤 정부 하에서 ‘국가 내에서 동의에 의해 수립한 입법 권력 이외에는 그 어떤 권력 하에도 있지 않는 상태’ 를 그리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또 그 사회에서 확립된 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을 뜻한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법률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인 셈이다.

“법률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의 의한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법률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57절)

이렇게 볼 때 자연상태란 인간이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통제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이지, 그 자신을 파괴하거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살해 할 수 있는 방종의 상태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자연상태란 자연법이 통용되는 상태이므로,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점철된 흉스의 자연상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로크의 자연상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 다닌다. 만일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로크에게 자연상태가 평화롭고 이성적이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공동의 정치체를 만들기 위해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살기는 하지만 공동의 재판관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상태는 항상 ‘두려움과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상황’이며, 비록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123절) 상태이다.

2. 자연법(이성, 하느님)

자연법이란 “이성 즉 하나님에 인류에게 준 공통의 규칙과 척도” (11절)를 말한다. 자연법은 인간의 의무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어떻게 자신의 창조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신의 규칙을 말한다(John Dunn, 1993. p.169).’ 그러므로 로크에게 자연법이란 ‘인간에 대한 신의 의지’이며 그런 점에서 자연법은 ‘인간의 행동에 관해 신이 내린 도덕 규범’을 의미한다. 고프는 이점에 주목하여 로크에게 자연법은 정치적인 법이라기보다 도덕적인 법이며, 바로 이 점에서 로크와 흉스는 결정적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즉 로크가 자연법을 제시하는 것은 흉스와 정반대로 정치를 도덕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적인 기준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프에 따르면 외견상 로크의 공격 대상은 필미이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흉스였다. 흉스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도덕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흉스에 따르면 선과 악은 그저 인간의 기호와 혐오를 표시할 뿐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의 관념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이 그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로크는 자연법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통해 바로 이러한 흉스적 입장에 반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존 고프, 1995. p.201 참조). 다른 한편 이와 관련하여 로크의 이론에서 종교나 도덕이 중시되고 이익의 역할이 과소 평가된다는 점에서 흉스의 이론보다 덜 근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S. Wolin, 1961. p.338).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성은 그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법과 자연법의 정당함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자연법을 아는가?’라는 문제를 로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로크는 인간에게 부여된 이성을 통해 모든 인간이 신의 의지인 자연법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가 로크 자신이 부인하는 형이상학의 본유 관념을 정치 이론에서는 인정하고 도입하는 비일관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킨다. 인간 이성과 자연법에 대한 로크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애쉬크 래프트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로크의 『통치론』 저술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며, 로크는 『통치론』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종교적 확신에 기초한 정치적 믿음을 서술하고 있다고 해석한다(Richard Ashcraft, 1994. p.226 참조). 그런데 로크에게 이러한 자연법은 자연과 사회 모두에 적용되는 유기적인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즉 신과 아담 사이에서 준수되었던 자연법은 가족생활에서도 그리고 경제생활에서도 더 나아가 온당한 의미의 국가에서도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M. Forsyth, 1993. p.198). 그리고 자연법의 핵심적 내용은 ‘자기 보존’이다. 고대와 중세에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외적 규범에 관한 이론으로 성립했던 자연법 이론이 흉스와 로크를 비롯한 근세 사상가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는 자연권 이론으로 탈바꿈한 것이다(김남두, 1993. p.6). 이들에게 정치 제도를 비롯한 모든 제도들이 일차적으로 생존과 편익의 추구라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로 규정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존해야 하며 고의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비슷한 이유로 그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가능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보존해야 하며,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6절)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으로서의 자연법에 의해 공존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 자연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자연법에 따라 군주에 의한 규율의 강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로크는 흉스와 다시 한번 구분된다. 그러나 자연상태에 대한 정의에서도 그랬듯이 로크에게는 흉스적인 어두운 면이 항상 존재한다. 허그스(C. Hughes)는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자연상태와 두 번째 자연상태를 구분한다. 즉 자연법에 따른 평화상태가 유지되는 자연상태와 공권력의 결여로 인한 권리의 침해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자연상태를 구분하고 로크에게 이 양면이 모두 공존하고 있음을 언급한다(C. Hughes, 1993. p.199 참조). 로크도 흉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욕구와 혐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욕구는 너무도 강렬해서 만약 욕구를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그것들은 모든 도덕을 뒤엎어 버릴 수 있다. 도덕법은 이러한 거대한 욕망에 대한 구속과 억제로서 설정된다(John Locke, 1975, §13). 다만 흉스와 다른 것은 로크가 인간이 전제군주를 세우지 않고도 그들 자신에게 이러한 규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로크의 이중성은 여기서 드러난다. 로크는 인간이 흉스적인 전제군주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연권과 권력을 시민사회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호전적이라고도 해야 했던 것이다. 즉 자연법과 이성이 부여한 규칙을 깨뜨리고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위반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위반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연법의 지배가 손상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로크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와 이 권리의 집행이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연상태에서나 시민사회 모두에서 개인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를 보유하지만 권리에 대한

집행권은 시민사회에서 개인이 아닌 정부에 이양된다는 점에서 자연상태와 시민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7절)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위반을 막을 권리와 의무를 맡는 역할은 개인 이외에는 수행할 주체가 없다. 만일 누군가 자연법을 어길 때, 즉 다른 무고한 사람을 공격할 때, 이를 저지하여 자신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혹은 이미 행해진 해악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자연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합법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권리” (8절)를 뜻하는 처벌권을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에 대해 권력을 갖게 된다. 이때 권력이란 침해에 비례하여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하며,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상태에서의 만인이 다른 만인에 대해 갖는 권력은 흑스가 말하는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른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며 자의적인 권력과는 구분된다. 로크의 경우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 즉 이성과 양심이 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이다. 로크는 이러한 자연법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단지 전제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로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연법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생략은 많은 정치 이론가의 비판을 초래했다. 자연법에 관한 로크의 논의가 경건하지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건하지 못함은 제외하더라도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생략은 심각한 결함을 뜻한다. 즉 로크의 정치 이론이 자연법 사상에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관해서 전적으로 신의 가르침에 의존하면서도 신의 가르침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됨으로 인해 로크의 정치 이론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두를 구속할 수 있는 규범적인 사회 이론으로 확립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John Dunn, 1984. pp.103-104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법 역시 합리적인 피조물이나 그 법의 연구자에게는 국가의 실정법만큼이나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12절) 더 나아가 로크에 따르면 각 나라들마다 존재하는 실정법, 국내법들이 자연법에 기초한 한도에서만 올바르며, 자연법에 따라 규제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3. 로크의 이중성: 흉스와의 유사성과 차이성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상태, 그리고 자연상태에 처해있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로크에게는 이중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자연상태에는 자연법이 지배하면서도 위반되기도 하고, 인간이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흉스와 로크의 사상적 친화성과 차별성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양자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해석을 살펴보면, 첫째로 비록 로크가 후일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흉스보다 훨씬 자유주의적이 되기는 하였지만, 초기의 로크는 흉스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크랜斯顿(M. Cranston)은 그 근거로 로크가 초기 논문에서 시민적 행정관이 대표하는 정부에 커다란 권한, 심지어는 흉스적인 ‘자의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Maurice Cranston, 1957). 둘째로, 로크의 국가에서 개별 시민이 갖는 정부에 대한 불복종의 자유는 흉스의 국가에서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즉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수립할 것에 일단 동의하게 되면, 모든 개인은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로크가 최고의 권리이라 부른 입법부는 사실상 개별적인 신민들에 대해 흉스의 리바이어던이나 르소의 일반의지처럼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Willmoore Kendall, 1941. III). 셋째로, 로크의 자연법과 흉스의 자연법 간에 그 어떠한 근본적인 질적 차이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Leo Strauss, 1953). 자연상태는 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에 있어서도 무

법의 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크는 흡스주의자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흡스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Richard Cox, 1960). 넷째로, 흡스에 대한 수정된 해석을 통해 로크와의 유사성을 찾는 시도도 있다. 즉 흡스의 자연법은 비록 그것이 통상적으로 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진정한 도덕적 의무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흡스는 당대에 통용되던 신학적·윤리적 전제들을 거부하는 무신론적 유물론자로 해석되어 로크와 대비되는데, 이는 흡스의 진정한 의도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만약 로크의 진정한 정서가 『리바이어던』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흡스는 『통치론』 특히 『제2론』을 집필했을 법하다는 것이다(F.C. Hood, 1965. W.N. Watkins, 1965. p.99 등).

그러나 여러 면에서 로크와 흡스 간의 차이도 분명하다. 첫째로, 흡스의 주권은 분할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할될 수도 없는 반면에 로크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고 자의적인 개인의 권력을 거부한다. 둘째로, 로크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하늘에 대한 호소’를 허용하지만, 흡스의 경우에 그것은 공동체의 파괴를 의미하며, 어떤 경우든 주권자는 신의 의지에 대해, 권한을 가진 유일한 해석자이다. 셋째로, 흡스의 자연 상태에는 재산도 소유지도 존재하지 않으며 내 것과 네 것의 구분도 없다. 그러나 로크의 경우에는 노동이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를 창출한다. 흡스는 무신론자일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로크는 정통 종교를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의심할 여지없는 기독교 신자이다. 넷째로, 흡스는 사실상 교회를 국가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지만, 로크에게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된 자발적인 사회이다. 이렇게 볼 때 고프의 말처럼 로크는 항상 흡스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반대로 로크가 흡스의 영향을 전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204-205 참조). 그리고 래슬릿의 주장처럼 흡스는 언제나 로크 사상의 배후에서, 곧 ‘멀리 떨어진 커다란 물체에 의해 행사되는 인력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Peter Laslett, 1967. p.74).

맥퍼슨은 로크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로크가 비록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원인에서 도출된 두 가지 사회관을 염두에 두

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상태나 인간본성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즉 하나는 사회를 동등한 무차별적 존재가 결합된 것으로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를 합리성의 수준에 따라 구별되는 두 계급의 산물로서 보는 관점인데, 그 두 계급은 근면하고 합리적이며 재산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즉 노동을 하고는 있지만 단지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갈 뿐, 축적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이다. 이것이 로크가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회적 전제들이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자신의 이론의 암묵적 전제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 이론의 이중성은 이론상의 이중성이 아니라 로크가 살고 있던 시대의 현실적 이중성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편 페이트만은 이에 반대하여 로크가 자본주의 사회를 위한 긍정적 도덕적 바탕을 제공했다는 점에 동의하기 위해 차별화된 합리성에 대한 맥퍼슨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253 각주 참조).

인간이 자립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는 로크의 견해에는 로크가 살던 당시 영국의 합리적인 자본가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다. 인간은 본래 평등하게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가정은 공허한 것이 아니다. 로크는 그 가정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불평등과 전제된 자연권의 평등을 뜻뜻한 마음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각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평등하게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게 합리적이라면, 재산추구에 있어서 언제나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그들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고 가정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소유를 공평하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낡은 자연법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보호 없이도 시장에서 서로 대결하는 데 나설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게 합리적이라는 가정으로 인해서 시장적 정의관과 전통적인 분배적 정의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로크의 또 다른 규정 즉 이성적이지 못하고 규칙을 어기는 위반자의 모습은 합리성에 있어서 계급 차이를 반영하는 것에 다

를 아니다. 가난한 자와 재산이 있는 자 간의 합리성의 차이가 또한 불안정하고 침해받기 쉬운 자연상태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의 삶을 이성의 법에 따라 영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법적 제재가 있는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재가 없는 상태 즉 자연상태에서는 아무런 평화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로크에 있어서 합리성의 차이는 사람이 타고난 것이 아니며, 신이나 자연에 의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획득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자연상태에서 획득되는 것이기에 시민사회에서는 천부적인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연상태와 인간본성에 대한 로크의 이중성은 로크가 살던 사회관과 인간관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것은 형식적 평등을 요구하면서도 권리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흡스의 이론은 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화 이론으로 삼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평등을 공언하고 그러한 평등을 자연법에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불평등에 대한 자연법적 정당화를 발견하는 이론이 필요했는데, 바로 로크의 이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맥퍼슨, 1990, pp.281-286 참조).

여담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로크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즉 자연상태에서나 정치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로크가 실은 왕립 아프리카 노예 무역 회사의 주주였다는 사실 말이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노예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옹호될 수 있는 노예 상태라는 것도 형별적인 것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침해당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보복권 중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를 잠시 유보함으로써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노예 상태는 범법자 자신에 국한되는 것이지 결코 자식들에게 상속될 수 없는 것이기에 당시 통용되던 상속적 노예제로 이익을 챙기고 있던 노예 회사의 주주였다는 것이 로크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120 참조).

4. 자연상태에 대한 반론

로크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자들에게 제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도대체 인류가 자연상태에 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사회 계약론자들이 말하는 자연상태란 존재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사회계약이론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한 가지 대응은 자연상태를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필요에 의해 가정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 때문에 로크의 역사 이해방식이 선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초역사적인 제일의 원리를 이미 전제하고 이에 따라 역사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M. Forsyth, 1993. p.202 참조). 계약 이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모두 자신의 이론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의도하지는 않는다. 즉 자연상태와 이에 근거한 계약 이론은 주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주권자의 권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설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통치론』의 내용만을 놓고 볼 때 로크는 자연 상태와 계약을 실제적 사실로서 믿거나 주장하려 했던 쪽에 가깝다. 로크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즉 자연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세상이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 (14절)이라고 주장한다. 로크에 따르면 비록 그 당시의 시점에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정이 “하나의 정치체(One Body Politic)” (14절)를 만들기로 서로 합의한 협약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연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체 속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전적으로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고 기술 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전세계에 걸쳐있는 독립된 정부에 소속되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부의 대표자 혹은 통치자들 사이에 앞서 언급한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 위한 합의가 맺어지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일종의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은 자연상태와 다름없는 것이기에 자연상태는 언제나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고프(Gough)에 따르면 로크의 진정

한 관심은 역사적 기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화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 198-199 참조).

『통치론』에서 우리는 사회계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자연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결성하는 계약의 상이함과 관련되는 것으로 로크의 『통치론』이 그 단서를 제공한다. 즉 로크가 자연적 인간으로서 진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것과 (정치) 사회의 성원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인도에서 두 사람이 교역에 관한 약정이나 협의를 하건, 혹은 미국의 삼림 속에서 스위스인과 인디언이 이와 같은 약정을 하건, 이러한 약정의 구속력이 이들을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로크에 따르면 이들이 동일한 정치체 혹은 정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약정이나 협의가 이들이 자연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5. 자연상태와 전쟁상태

홉스에게 자연상태가 곧 전쟁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로크에게서 이들은 명백하게 구분된다.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것” (19절)이 자연상태라면, “구제를 호소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 (19절)이 전쟁상태이다. 자연상태가 이성이 존재하며, 자연법이 규칙으로 존재하는 상태라면, 전쟁상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자연상태가 “평화, 선의, 상호부조, 보존의 상태” (19절)라면, 전쟁상태는 “적의, 악의, 폭력 및 상호파괴의 상태” (19절)이다.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누구나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쟁상태에서는 다른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에 처해 있는 셈이다.

자연상태와 전쟁상태의 차이는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자연상태와 시민사회가 양립할 수 없는 반면에, 전쟁상

태는 시민사회와 양립 가능하다. 원래 자연상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동의에 의해서 일정한 정치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 자연상태는 종식된다. 이러한 자연상태와 시민사회와의 차이를 로크는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 여부(19절)로 묘사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된 재판관이 있건 없건, 다시 말해 시민사회이건 자연상태이건 전쟁상태를 초래한다. 전쟁상태는 자연상태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태에서는 자유가 그 밖의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므로, 나와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17절)

“사회상태에서 그 사회나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속하는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는 그들로부터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그리하여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 된다.(17절)

자연상태에서 전쟁이 구제를 호소할 실정법이나 공통의 재판관이 없고 따라서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연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집행할 수밖에 없기에 발생한다면, 시민사회에서 전쟁의 발생은 공통된 재판관과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소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물리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곧 종료된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침략자든 방어자든, 둘 모두 복종해야 할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이 아니라 법과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왜곡과 곡해를 통해서 오히려 폭력을 옹호하고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이다. 로크는 이 경우 즉 비록 정의를 시행하도록 임명된 자들에 의해 법률의 이름과 명분아래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폭력과 침해로 간주한다. 법의 목적 즉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적용됨으로써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것” (20절)에 위배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그 법 혹은 그 법에 따른 결정에 복종할 필요

가 없으며, 이처럼 법이나 법의 집행자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전쟁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을 다루는 뒷부분에서 다시 고찰하게 되겠지만 법의 원래 목적에 위배되는 법이나 법 집행관이 존재하는 상태를 시민사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상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로크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통의 법이라는 것이 구성원이나 집단 모두의 동의에 근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동의만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로크의 입장은 비교적 단순하며 일견 순진해 보이기도 한데, 로크는 어떤 법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이성, 양심을 가진 인간들이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2절 참조). 이 점은 사회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존재하는 현대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6. 노예계약의 불가능성

로크는 타의에 의한 노예화 뿐 아니라 자의에 의한 노예화에도 반대한다. 타인이 자신을 노예로 삼으려는 시도 다시 말해 ‘나의 동의 없이 나를 그의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하에 두고자 하는 것’에 맞서 그를 공격하거나 죽여서 자신을 보존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타인의 노예로 삼으려는 권리가 없음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로크는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구분한다. 자연적 자유가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로서 “지상의 우월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서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22절)을 말한다면, 사회적 자유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로서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서 제정된 입법권 이외에는 여타의 입법권 하에도 있지 않으며 그 입법부가 위임받은 신탁에 따라 제정한 법 이외에는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어떠한 법의 제약 하에도 있지 않는 것”(22절)을 말한다. 자유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어떤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는 이성과 자연

법의 한계 안에서의 자유이며, 시민사회에서의 자유는 실정법의 한계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 (즉 사회적 자유)란 일정한 법률, 곧 그 사회에서 설립된 입법권이 제정하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을 가지는 것이다. 그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모든 사안에서는 나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자유 즉 다른 인간의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 (즉 자연적 자유)이다. 자연의 자유가 자연법 이외에는 어떠한 구속 하에도 있지 않듯이 말이다.” (22절)

노예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또한 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로크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내줄 수 없는데,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력을 내줄 수 없다.” (23절)

역사적으로 노예 상태의 전형적인 예는 전쟁에 따른 정복자와 포로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나 로크는 정복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것 다시 말해 침략을 받아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상대의 생명권을 몰수했으나 이를 잠시 유예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와 불법적 정복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여 노예로 삼은 경우를 구분한다. 후자의 경우 즉 불법적 정복의 경우 주인은 어떤 근거에서든 노예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며, 전자의 경우 즉 합법적 정복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노예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7.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자연상태 이론의 귀결)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크 이론에서 자연상태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부여한 인간의 기

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밝히기 위한 이론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즉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 내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요구받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느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연법에 따라 살라는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러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자연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인간이 부담하는 의무는 이 법 아래서 그가 소유한 권리에 상응한다. 이 권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인간들이 자연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들을 처벌할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력이라 할 수 있다.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별해 주는 것은 이러한 집행력을 누가 행사하며, 어떤 경우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모든 인간적 정치 공동체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자연 상태는 정치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인간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권위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도달점이란 정치 사회에서는 자연상태와는 달리 자연법을 집행하는 개별 인간의 권력을 함께 결합하되 개인의 집행권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로크는 인간 공동체를 위한 거대한 권력의 현실적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이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연법을 집행하는 신민들의 권력과 관련해서 폭력적인 정복과 대비되는 정치적 권위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합의와 동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오직 성인인 인간들의 합의만이 다른 인간에게 그들을 지배하는 정치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로크에게 동의는 이처럼 정당한 정치 사회와 정당하지 못한 정치 사회 사이에 어떻게 기본적인 구별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에는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다.

‘명시적 동의는 한 인간을 일생 동안 그가 속한 정치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말해 그러한 구성원의 자격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가진 자로 만드는 동의’를 말한다. ‘묵시적 동의는 이 보다 약한 것으로 한 인간이 특정 국가에 머무르는 동안 그 국가의 법에 따르게 만드

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로크가 자신의 동의 이론을 통해 신민들의 정치적 의무에 대한 이론, 신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의무를 가지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어떻게 정치적 권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로크의 동의 이론이 통치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으로, 그럼으로써 통치자의 자의적 통치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기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로크가 입헌주의를 통해 지배자의 자의적인 인치 보다 법치의 이념을 우선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 아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던에 따르면 로크에 있어서 결국 인간적인 통치는 인간의 통치이며, 인간의 선한 의도가 헌법의 업격함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어네스트 마커 외, 1995. p.127-128 참조). 던은 그 근거로 로크가 대권이라 부르는 지배자의 특권 즉 정당한 정치 사회 내에서 통치자가 공공선을 위해 법에 반해서까지 행 사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의 사용 권리와 아울러 인민의 저항권 즉 통치자의 권리가 심히 남용되었을 때 정당한 정치 사회의 통치자라 할 지라도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의 권리, 이 두 가지 권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로크가 자연상태 개념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 했던 정치적 권리가 바로 이러한 권리들인 것이다.

III. 사회 계약론

1. 사회 계약론의 기원

사회 계약 관념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다. 이 개념은 B.C. 4세기인 플라톤의 시대에도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19세기 말 스펜서(H. Spencer)의 저작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사회 계약론의 위대한 시기는 무엇보다도 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가 자신의 사상을 개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651년 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출간부터 1689년 로크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을 거쳐 1762년 루소의 『사회 계약론』(*Du Contrat social*)이 나오기까지 약 1세기 동안에 사회 계약론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등장하여 이후 정치 사상사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들의 사회 계약론은 그로티우스, 푸媪도르프, 피히테, 및 칸트에

이르는 자연법 학파의 사상가들에 의해 구축된 자연법 사상을 배경으로 개진되었으며 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로크가 『통치론』의 『제1론』을 저술하게 했던 필머 경(Sir Robert Filmer)의 『족장론』(*Patriarcha*)에서는 사회 계약론이 “먼저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 탄생되었고, 뒤이어 모든 교황주의자들에 의해 신성(神性)을 옹호하기 위해 속성되었다 “는 언급이 나오듯이,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이 염두에 둔 사회 계약의 관념은 중세의 스콜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속에 훗날 정치적 자유주의를 잉태한 세 가지 사상적 흐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그 첫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며, 2) 두 번째는 로마법의 교리이고, 3)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이념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성경에는 ‘권력이란 신의 승인에 의한 것 ‘이라는 가르침과 함께, 다윗 왕이 그의 백성들과 서약을 맺는 예가 등장한다. 2) 또한 로마법에 따르면 군주의 마음에 든 것이 곧 법의 효력을 지닌다는 것과 함께 어떠한 법도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법률은 곧 인민들이 제정한 것임을 명백히 한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정치적 원리는 최선의 1인에 의한 군주제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왕과 침주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를 선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책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를 인정한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세 가지 사상적 흐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Ernest Barker, 1962. pp.vii-xliv). 1) 권위의 원리 또는 본질적인 실체는 신의 승인에 의한 것이다. 2) 그러나 권위의 양식 또는 현정적 형태는 (그것이 군주정·귀족정·민주정·혼합정이든 상관없이) 인민에 의해 결정된다. 3) 그리고 권위의 행사 또는 실제적인 향유는 인민에 의해 부여되며 그러므로 인민에 의해 철회될 수도 있다. 특히 세 번째 주장이 함축하는 것은 정부는 공동체에 의해서 제도화되며, 만약 그것이 전제화된다면, 공동체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일 통치자가 전제화 되면 인민들은 그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생각은 중세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의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체계였기 때문이다. 봉건제

하에서 각자는 자신의 영주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에게 충직하고 진실되게 복종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봉건 시대의 왕이 자신의 대관식에서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한 데 대해 선정을 공약함으로써 약을 교환하는 것은 왕과 신하들 사이의 암묵적 계약을 함축한다. 이러한 계약의 관념은 교회와 세속 정부 사이에서도 성립하였다. 인민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왕에게서 권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처럼, 교황이 신에 대한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파문을 통해 왕에게서 신이 준 권위의 원천을 박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자연법과 이에 따른 자연권이었다. 즉 이러한 계약의 타당성의 근거는 자연법이고 그래서 사회 계약의 관념과 자연법의 관념간에는 항상 긴밀하고도 친근한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로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중세에 이어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사회 계약론은 종교적 색조를 띠며 지속하였다. 그것은 소수 종파가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를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자신들의 저항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그것이 소수파 칼뱅주의를 위한 것이든 또 다른 소수파 로마 카톨릭을 위한 것이든 사회 계약론은 종교의 무기였으며, 모든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종교적 자유라는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이론적 무기 역할을 하였다.

2. 두 가지 사회계약 I : 사회계약과 통치계약

사회계약은 두 개의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관념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는 ‘통치 계약’(혹은 ‘정부 계약’: the contract of government, pacte de gouvernement, Herrschaftsvertrag)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계약’(the contract of society, pacte d'association, Gesellschaftsvertrag)이다. 통치 계약이란 통치자와 신민 간에 맺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통치 계약은 논리적으로 사회 계약을 전제한다. 조직화된 공동체의 본성에는 통치자와 신민 간에 어떠한 계약이 있기 전에 이미 무언가, 즉 이미 공통된 사회적 의지로 응집된 잠재적 신민 집단과 그러한 의지에 부응하여 통치의 부담을 떠맡을 태세가 되어 있는 잠재적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치 계약 이전에 사회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정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국가

는 그 구성원간에 체결된 사회계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통치 계약이란 권력(*potestas*)만을 창출하는 계약이며, 사회 계약이란 오직 사회(*societas*) 자체를 창출하는 계약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사회 계약의 존재를 암묵적으로나마 상정하지 않고서 통치 계약의 존재를 믿을 수는 없지만, 통치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도 사회 계약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홉스, 로크, 루소가 관심을 가지고 강조했던 것은 통치 계약이 아니라 바로 사회 계약이었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는 일단 형성된 후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력을 비우고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에게 넘겨줄 수 있으며, 리바이어던은 공동체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치 계약의 어떠한 한계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크의 사회 계약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는 일단 형성된 후에 정부와 계약을 맺지 않지만, ‘수탁자’(fiduciary, trustee)로서 정부를 임명하고, 신탁의 성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에 근거하여 신탁 위반을 이유로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통치자와 신민의 구분 없이 자치적이고 따라서 서로간에 통치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3. 두 가지 사회계약 Ⅱ: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통치 계약과 사회 계약이 구분되는 것 이외에도 계약이 맺어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사회계약은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으로 구분된다.

“보통 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현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119절).

이처럼 명시적 동의는 그 형식과 내용에서 이론의 여지가 적다, 문제는

묵시적 동의이다. 무엇을 묵시적 동의로 간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로크는 정부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통한 복종의 예로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119절)

이처럼 모든 토지는 정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명시적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에 살거나 이를 향유하면 정부의 지배에 대해 복종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묵시적 동의에 기반 한 복종의 의무는 토지의 향유와 함께 시작하고 종료된다. 그는 그 소유물을 양도하고 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정부를 떠나서 다른 정치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정치 사회 혹은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 협약이 필요하며, 이처럼 특정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로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와 달리 구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명시적인 표명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은 불가불 영구적으로 그 나라의 신민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이를 변경시킬 수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를 다시는 누릴 수 없다. 어떤 재앙에 의해서 그의 위에 군림하던 정부가 해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공적 행위에 의해서 그를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 한 말이다.” (121절)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그 집에 머무른다는 사실이 그를 그 집의 구성원으로 만들지 않듯이, 이 사실(즉 그 나라의 법률의 힘이 미치는 지역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 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 곧 그 공동체의 영구적인 신민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 어떠한 사람도 그가 적극적인 협정이나 명시적인 약속 및 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나라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신민이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정치사회의 기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느 공동체의 성원으로 만드는 동의에 관해 내가 생각하는 바이다.” (122절)

그러므로 로크에게 정치 공동체를 결성하는 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에 기반 해야 하는 반면, 화폐를 발명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이나 재산을 향유하면서 그 재산이 속한 나라에 복종하기로 하는 것은 묵시적 계약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하는 계약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계약 중 통치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로크에게는 사회를 결성하는 계약 즉 사회 계약이 통치 계약마저도 대신하며 이것이 신탁으로서 계약이 갖는 의미이다.

4. 신탁(trust)으로서 계약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영어 ‘trust’라는 표현을 ‘신탁’으로 번역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trust’는 한편으로는 ‘신탁’으로, 또 한편으로는 ‘신뢰’로 번역할 수 있는데, 특히 어네스트 바커의 해석을 부각시킬 때는 ‘신탁’으로, 존 던의 해석을 위시한 일반적인 의미를 부각시킬 때는 ‘신뢰’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신탁’이라는 번역은 구체적인 영국법상의 의미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어네스트 바커 외, p.94. 역주 참조). 그리고 이렇게 로크의 사회 계약론을 ‘신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서 통치 계약이 차지하는 자리가 없고 사회 계약이 중심이 되는 이론 전개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신탁에는 세 명의 당사자가 존재한다. 1) 신탁의 창설자 또는 신탁자, 2) 수탁자, 3) 신탁의 수혜자가 그것이다. 신탁자에 대해서 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 수탁자가 신탁의 수혜자에 대해 계

약을 맺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수혜자에 대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탁의 구조이다. 이러한 신탁의 개념이 정치 이론에 적용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가? 여기에는 단지 두 개의 당사자만이 존재하는 셈이다. 즉 신탁자(공동체, 인민)와 수탁자(정부)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탁의 수혜자가 곧 신탁자이며 둘 다 인민이기 때문이다. 신탁자로서 공동체(혹은 인민)는 수탁자로서 정부와 계약에 들어가는데 이때 수혜자로서 공동체(인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수탁자로서 정부는 공동체(인민)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으며, 신탁과 그 배경이 되는 신법 혹은 자연법에 의해 설정된 한계를 통한 의무만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142절 참조).

따라서 정치적 신탁은 의무의 부담을 의미한다.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탁된 권력의 남용 혹은 해태(neglect)에 대한 책임이다. 그 책임은 신탁에 반한 행동을 이유로 정부를 폐지하는 것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리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그 목적을 명백히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신탁은 필연적으로 철회되며, 그 권리은 그것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149절)

정부의 신탁 개념은 로크의 이론에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회의 관행에서도 수용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인민간의 원초적 계약의 관념보다 정부에게 훨씬 불리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계약이란 고유한 권리의 갖는 각각의 당사자가 자신이 받는 것을 대가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데, 신탁으로 해석된 사회계약에서 수탁자는 수혜자에 대해서 이처럼 독립된 당사자의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상호 배려를 조건으로 상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탁자로서 정부는 수혜자로서 인민에 대해서 의무만을 부담 할 뿐 권리은 없다. 역으로 수혜자로서 인민은 수탁자로서 정부에 대해서

권리만을 가질 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로크의 사회 계약을 단순한 계약이 아닌 신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대신 의무를 많이 부담 지우고자 하는 로크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이다. 단순한 계약으로 해석할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 인민이 계약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데 반해, 로크에게 정부란 인민 안에서, 인민을 통해서,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신탁으로 해석할 때만 그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인민간의 통치 계약은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으며 신탁을 통한 정부의 의무와 인민의 권리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흉스의 경우, 그에게도 통치 계약이 들어설 곳이 없지만 그 이유는 로크와는 정반대이다. 즉 통치 계약의 관념이 인민에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흉스는 이를 배제했다. 왜냐하면 통치 계약의 관념에 따르면 인민의 공동체가 리바이어던과 대치함에 있어서 독립된 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흉스에 따르면 인민은 리바이어던 안에서 그리고 리바이어던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5. 로크의 사회 계약론 정리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로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다.

1) 로크는 인민이 스스로의 결사를 통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나 정부를 구성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은 즉시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게 되며” (95절) 그리하여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흉스는 이와 반대로 단체란 오직 주권자의 인격에 의해서만 형성되는데, 주권자는 자신의 신민의 모든 인격 즉 권리와 권력을 자신의 인격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그들을 하나의 인격 또는 정치 단체로 만들어 낸다. 로크는 사회의 단체를 내재적인 것으로 즉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응집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흉스는 사회를 외생적인 것으로 즉 구성원의

우두머리가 적용한 응집력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흉스에게는 절대 군주인 우두머리를 제외하면 단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로크에게는 수탁자(통치자, 정부) 없이도 사회적 단체는 존재할 수 있다.

2) 로크에게 사회 계약론은 자연법 사상 및 이에 근거한 자연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주권에 대한 로크의 입장이다. 로크는 주권의 본질이나 소재에 관해서는 명백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때로는 인민 혹은 공동체가 최고의 권력(149, 240, 243절 등)을 가진다고도 하고, 때로는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134, 135, 138절 등)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로크에게 입법부는 공동체 전체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의해 임명된 대표 기관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입법부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행정부가 1인에게 맡겨져 있고 그 사람이 입법부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최고의 권리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151절)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로크는 주권이나 최고 권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주권자가 누가 되었든 이 개인의 권리가 주권자에게 부과하는 한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권리라는 다름 아닌 자연권이기에 이러한 권리의 토대는 바로 자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궁극적인 통제권 혹은 최고의 주권자는 입법부도 아니고 심지어 입법부의 배후에 있는 인민의 공동체도 아니며 자연권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법의 체계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체가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극심한 탄압에 맞서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으로 행동을 개시할 때, 공동체가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연법의 위엄인 것이다.

3) 비록 미약하기는 하나 『통치론』에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공동체의 주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인간이 처음으로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하자마자 자연히 공동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는 그 모든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수시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들이 임명한 관리에 의해서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형태는 완전한 민주정이 된

다 [...]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 중에서 공동체는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정부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입법권이 처음에는 다수에 의해서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일생 동안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최고의 권력이 다수에게 되돌아간다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올 때 공동체는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새롭게 맡길 수 있으며 그리하여 새로운 정부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132절)

이처럼 로크가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의 주권성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이를 강력히 내세우지는 않는다. 로크는 당시 하원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휘그 당의 의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6.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

사회 계약론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이 관념이 정치적 삶의 해석에 있어서 유기적이 아니라 기계적이며, 정치적 의무의 정당화에 있어서 윤리적이 아니라 법률적이며, 정치적 사회와 정치적 권위의 설명에 있어서 역사적이 아니라 선협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한 비판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계약론이 비록 선협적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점에서는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계약론은 11세기 말 교황과 황제가 투쟁하던 시기이래 길고도 지속적인 역사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 계약론은 역사적 인과관계의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사회 계약론은 종교적 자유의 명분을 방어하기 위해 1570년 프랑스의 위그노에 의해서 사용되었든, 1688년과 그 이후 영국의 휘그 당에 의해서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기 사용되었든 자유를 촉진하는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설혹 결코 계약이란 것이 실제로 없었다 할지라도, 즉 역사적이 아니고 선협적이라 할 지라도 사람들은 마치 그러한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일종의 준계약(quasi-contract)처럼 행동하고 활동하면서 이를 통해 훌륭하고 효율적인 사회 결속 및 정치 운용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사회 계약론이 기계적이고, 법률적이며, 선협적일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회 계약론을 통해 사람들은 두 개의 가치를 항상 마음속에 신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유와 정의의 가치이다. 즉 힘이나 강제적 물리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가 통치의 기초가 된다는 자유의 가치와, 무력이 아니라 정당함이 모든 정치 사회와 정치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정의의 가치가 사회 계약론을 통해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을 규제하는 일반적 가치로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7.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의와 가치

로크의 것을 포함한 사회 계약론의 현대적 의의와 가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19-20 참조).

1) 역사적으로 사회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사회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결성되는 것이며, 법의 관념을 초월한 것이며, 저절로 성장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적’이라는 말의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2) 반면에, 사회와 구분되는 국가는 계약의 관점에서 타당하게 개념화 될 수 있으며, 우리를 국가를 계약에 토대 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비록 혁명 후에 또는 연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행위에 의해 창설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법적 결사이며 그 구성원들의 헌법 제정 행위에 의해 창설되고, 그러한 행위 내에서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구성원들은 서로 정치체를 구성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제정 행위는 때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오랜 시일에 걸친 일련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가의 헌법은 계약의 조항이며 그 계약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우리는 사회 계약은 아니지만 여하튼 헌법 조항에 포함된 (신민들 사이의) 정치 계약을 말할 수 있다.

3) 우리시대에 국가의 한 부분인 이른바 통치자가 다른 부분인 신민들과 서약을 했다고 하는 ‘통치 계약’의 관념을 적용하거나 호소할 필요는 없다. 헌법에 규정된 우리 각각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통치자간 신민인간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헌법의 차원에서 그리고 헌법 하에서 결합시

켜 단일체로 만든 계약인 하나의 정치 계약, 이 단일의 계약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유일한 계약이다. 정부란 것이 여전히 저절로 생긴 것이며 신민들에게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서 군림하는 것으로 믿어지던 시대에는 신민과 통치자간에 그들의 상호 한계를 확정하는 계약이 있었고,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정부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체와 마찬가지고 단순히 법적인 결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일의 유일한 계약인 헌법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

IV. 정치사회(시민사회)

1. 정치사회(시민사회)의 정의

『통치론』에서 로크는 ‘정치사회’ 와 ‘시민사회’ 를 동일한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이 두 개념은 구분된다. 정치사회는 국가를 뜻하고, 시민사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사회를 뜻한다. 시민사회(die brgerliche Gesellschaft 또는 부르주아 사회)는 시장이나 재산권 같은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사회(civitas, poltitical body)의 물리력에 의존한다. 여하튼 『통치론』 만을 보면 로크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이트만에 따르면 로크가 자연상태를 비정치적 상태로 보지만, 자연상태가 통치를 결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로크가 ‘사회’ , ‘시민사회’ , ‘정치사회’ , ‘통치’ 와 같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251).

로크에 따르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공체에게 양도한 곳” (89절)이 바로 정치사회이며 시민사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또한 소유권을 비롯한 자연법 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누릴 자격을 지니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즉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할 경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이를 심판하고 더 나아가 그 위반 행위가 마땅히 치려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는 바로 자연상태에서 각각의 구성원이 가지는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수중에 자신들의 권력을 양도할 때, 오직 이때에만 존재하게 된다. 즉 자연상태에서든 정치사회에서든 개인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제반 권리를 가지지만,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해 주는 것은 그 권리의 집행권을 자연상태에서는 각각의 구성원이 갖는 반면, 정치사회에서는 공동의 법 혹은 재판관에게 이 권리가 양도되어 있다는 점이다.

“누가 정치사회에 같이 있고, 누가 같이 있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결성한 자들로서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통의 확립된 법과 재판소를 가진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있으며, 지상에서 그처럼 공통된 호소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달리 재판관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인 자연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87절)

2. 정치사회의 구성원

로크가 사람들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에 복종한다고 할 때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때로는 생명, 자유, 자산을 뜻하고, 때로는 자산이나 재화만을 뜻한다. 그 결과 자산이나 재화가 없는 사람, 즉 협의의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사람들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로 이행할 때 소유권이 생명, 자유, 자산으로 다루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지만, 자산이나 재화만을 뜻한다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로크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에는 오직 하나의 답변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 구성원에는 협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협의의 소유권 즉 자산을 가진 사람만이 충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이들만이 소유권을 보존하는 데에 충분한 정도의 관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들만이 시민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생활 즉 자발적으로 이성의 법칙에 복종하는 생활을 완전히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을 가지지 못한 노동 계급은 시민사회에 예속은 되지만 시민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은 아닌 것이다. 지배의 측면에서는 자산 소유자만이 권리를 지닌다. 왜냐하면 과세 없이는 어떠한 정부도 성립할 수 없는데 과세는 자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정부에 대해 이들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복종의 측면에서는 자산의 소유자이든 그렇지 않는 모두가 해당된다. 왜냐하면 법의 지배, 정부에 대한 복종은 자산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119절)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동의가 그를 그 나라의 법률의 지배를 받게는 할지언정 그 나라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되게 하지는 않는다. 어떤 시민사회 의 완전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명시적 표명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은 불가불 영구적으로 그 나라의 신민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이를 변경시킬 수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를 다시는 누릴 수 없다.” (121절)

그리고 이러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표명하는 사람은 협의의 재

산을 가진 사람이고 이들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동의에 도달한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자신을 어떤 공동체에 가입시킬 때, 그렇게 결합시킴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획득할 소유물로서 이미 다른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그 공동체에 부속시키고 그 지배하에 둔다. 왜냐하면 누구든 재산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회의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재산인 그의 토지가 그 토지의 주인이 신민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지배권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전에 자유로웠던 자신의 인신을 어떤 공동체에 결합시킬 때, 동시에 그 행위를 통해서 그전에 자유로웠던 그의 소유물도 또한 그것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120절)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자산의 소유자여야 하지만 그 역은 아니다. 즉 모든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은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처럼 그는 단지 그 정부의 재판에 예속될 뿐이다. 로크가 묵시적 동의의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모든 기준의 국가에 사는 현재의 시민들을 통해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보여주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크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것은 평등한 개인의 자연권을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무소유자 즉 계급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정당화한다는 사실이다. 계급 국가는 한 계급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면서도 그 계급을 국가의 완전한 일부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로크가 의도적으로 평등한 자연권 이론을 계급국가에 대한 정당화로 왜곡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거꾸로 계급국가의 현실이 그의 자연권 이론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이론이 역으로 계급국가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무제한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그래서 계급의 차이를 초래하는 권리를 평등한 자연권으로 도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크의 시민사회 이론에 내재된 모순은 그가 필연적으로 계급적 내용을 가진 권리와 의무를 계급적 색채를 배제한 보편적 용어로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맥퍼슨, 1990, pp.286-289 참조).

3. 정치 권력(처벌)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정치사회에서 국가가 하는 역할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직결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로크는 정치권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즉 정치권력은)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서문 9-10)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권력에는 입법권과 아울러 전쟁과 평화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크에게 이러한 국가권력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의 ‘재산을 보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그 사람은 또한 위정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해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부에 양도한 것과 아울러, 공동체가 스스로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청할 때는 언제나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에게 내준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재판은 그 자신이나 대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신의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로크에 따르면 시민社会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기원은 여기에 있다.

“그와 같은 권력은 국가 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처벌되어야 하는 가를 명시적인 법률에 따라 심판하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가를 당면한 상황에 근거하여 수시로 내려진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권리이며, 양자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구성원들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88절)

정치 권력의 본질적인 임무는 그것이 없었을 경우 발생하는 것보다 훨

씬 더 높은 수준의 자연법을 준수하는 일이다. 정치 권력의 부재 시에는 상호간의 모든 분쟁 속에 휘말려 있는 모든 남녀가 그들 자신의 분쟁의 판결자가 될 것이므로, 한 정부가 그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봉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부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그 신민들의 태도는 이 실질적인 봉사의 정도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John Dunn, 1993. p.170).

로크에게서 우리는 정치권력이 비록 시민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공적인 권력은 그 사회의 구성원보다 상위에 있음을 보게 된다. 독창적인 정치이론가로 알려진 아렌트(H. Arendt)는 이러한 수직적 권력관을 배격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수평적 권력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4. 정치사회(시민사회)와 절대군주제

절대군주제도 나름대로 호소할 법과 재판관을 갖추고 있기에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궁금해진다. 실제로 흉스의 경우 시민사회와 절대군주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생존에 대한 모두의 공포는 일인의 절대권력자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인도한다는 흉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따를 때 우리는 시민사회와 절대군주제를 구분할 근거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로크의 경우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로크에게 절대군주제는 시민사회와 양립 불가능하며 결코 시민적 지배형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로크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피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침해를 받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달성된다.” (90절)

여기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권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로크가 1인의 절대적 강자가 존재하는 상황 즉 절대군주제를 시민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절대군주제 아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호소할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가 결여된 이유로 군주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절대군주는 혼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정 되기 때문에, 군주가 저지른 또는 그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 침해나 폐해에 대해서는 재판관, 곧 권위를 가지고 무사공평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따른 구제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지 않다.” (91절)

5. 절대군주제와 자연상태

로크는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절대군주의 지배아래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자연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짜르라고 부르든 대군주라고 부르든 기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칭호로 부르든 그러한 사람은 그의 지배 밖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임의의 두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들 사이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상에 호소할 수 있는 유효한 규칙이나 공통된 재판관이 없는 경우에 그들은 여전히 자연상태와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폐단을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91절)

로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대군주제를 자연상태에서 퇴락한 상태 즉 자연상태 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규정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크에게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연법이 부여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데 반해 절대군주제 아래서는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그의 권리에 대해서 심판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것을 유지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절대군주의 신민은 이제 그의 재산이 군주의 의지와 명령에 의해서 침해될 때 사회에 있는 인간들이 의당 가지고 있는 아무런 호소의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마치 이성적인 피조물이 평상시 그가 누리던 상태로부터 영락한 것처럼, 그의 권리를 판단하고 방어할 자유마저 부정당하게 된다.” (91절)

그래서 로크는 절대군주제 아래의 사람들을 노예와 다름없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흡스와 로크의 차이는 절대군주제에 대한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흡스가 절대권력이 인간의 꾀를 정화시키고 인간성의 비열함을 교정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로크는 그 반대로 본다. 절대군주제는 자연상태 보다도 더 퇴락한 노예제 사회라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절대군주제에서도 신민들이 법에 호소하며, 신민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고 폭력을 억제하는 재판관의 존재를 보기도 한다. 로크는 이처럼 양호한 경우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절대적 지배자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어떠한 안전책과 어떠한 울타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인간이 자연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법률의 구속 하에 있어야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은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모든 자유를 여전히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리에 의해서 증대시키고 또 무절제하게 사용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인간이 스컹크나 여우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을 하면서도,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데는 만족하거나, 아니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93절)

그러므로 로크에게 진정한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는 인민의 입법부가 설치되어 있고, 인민이 입법부의 일원으로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며, 이러한 법률에의 복종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부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개인은 가장 비천한 인간과도 평등하게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이 되었는데, 그 법률은 또한 그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제정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누구도 일단 제정된 법률의 위

력을 자신의 권위를 빙자하여 폐할 수 없으며, 또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자기 자신이나 부하의 비행을 허용하는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시민사회의 어떤 사람도 그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94절)

바로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한 가지를 법치로 이해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

6. 정치사회의 기원: 사회계약, 동의, 협정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크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로크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 (95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크게 보아 로크에 따를 때 정부는 두 가지 카테고리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하나는 정통성을 가진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통성을 결여한 정부이다. 정통성이 있는 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반한 정부이고 정통성을 결여한 정부는 정치 권리가 신민의 동의 없이 오로지 정복을 통해서만 확보되어 있는 정부를 말한다. 후자는 설혹 폐통치자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강제적인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로크가 시민 사회라고 부르는 참된 정치적인 공동체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결성한 공동체이다. 이 정치 공동체가 내세우는 권위의 기초는 오직 하나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해준 동의이며, 그 중에서도 법률 제정 즉 입법권과 조세 징수 등에 대한 동의이다. 전체 군주제 혹은 절대군주제는 사람들의 동의 위에 존립한다거나 그 신민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정치적인 공동체일 수가 없으며, 정통성 있는 권위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치 사회의 성립을 순전히 동의나 계약에만 의존하는 로크의 이론은 정치적 의무에 대한 불완전 설명이며 더 나아가 무정부주의를 내포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입장은 정치적 의무를 법에 대한 동등한 복종을 통해 혜택을 보는 정치 공동체 참여자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 모든 혜택이 사회의 공조체제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정치 사회 내에서 법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는 시민은 동일한 의무를 지는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기꺼이 향유하는 자의 의무는 천부적 동의나 계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에 대한 복종의 형평성 즉 공정성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참된 정치적 의무는 로크식의 ‘동의의 의무’(obligation of consent)가 아니라 ‘공정성의 의무’(obligation of fairness)라는 것이다(A.J. Simmons, 1993. p.249). 로크가 말하는 것처럼 동의 이론에 대한 신봉은 완화된 형태의 철학적 무정부주의를 함축하는데, 이는 호혜, 공정성 같은 기초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 의무에 대한 복종 이론은 정치적 의무나 권위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서는 취약하며 결국 무정부주의에 귀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로크의 구분에 내포된 문제들을 논하기 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로크가 말하려 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크는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정치 권력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 권력의 핵심은, 한 정치 사회 내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집행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정치 사회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여 집단적으로 조성된 총력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던(Dunn)은 로크의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정통성을 보유한 정치 권력(legitimate political power)의 기초를 신뢰 ‘라고 해석한다(John Dunn, 1993. p.172). 즉 정통성의 근원은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계약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자체가 명시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피통치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대변하는 지의 여부이다.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크가 그의 동시대 국가들을 정당한 지배 형태와 정당하지 못한 지배 형태로 나누는 가장 뚜렷한 제도상의 기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법률 제정 기구 즉 입법부의 역할이다. 위와 같은 선거에 의한 의회를 통하여 각 세대는 전승되어 온 법률들을 개정할 수 있게 되며 자신들이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법률들에 대한 자신들의 동의를 암묵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로크가 말하는 이러한 정치사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이 존재한다. 1) 하나는 역사적 반대 즉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적 개인들이 함께 모여 정치 공동체를 창설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 2) 다른 하나는 도덕적 반대 즉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 것이다. 후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그는 이미 존재하는 정부 하에서 태어나고 그 정부에 복종해야 하기에 새로운 정부를 창설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첫 번째 반론과 관련하여 로크는 역사상 전시대 걸쳐, 그리고 세계 모든 곳의 정치체의 출발도 자신이 말하는 정부의 기원의 실례에 해당된다 고 강변한다. 특히 이러한 실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정치 공동체가 문자의 발명 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는 점과 그에 따라 문자화되지 않은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의 소실을 제시한다.

“정부는 모든 곳에서 문서상의 기록보다 먼저 발생하였으며, 문자라는 것은 시민 사회가 오래 지속되어 다른 필수적인 기예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안전, 편안, 풍족함이 보장된 연후에야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국가의 건국자들의 역사를 더듬어보고 그 기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이미 사라진 연후였다.” (101절)

정부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상식 즉 역사적으로 모든 통치는 가부장적 1인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검토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1) 첫 번째 반론: 가부장적 기원

로크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의 기원 즉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동의에 기반한 정치 공동체의 결성과 대립되는 정부의 가부장적 기원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한다.

“만약 우리가 역사가 지시해주는 바에 따라 국가의 기원에 관해서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인의 정부와 행정하에 있던 국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나(로크) 역시, 가족이 그 자체로 존속할 만큼 숫자가 많지만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에서 종종 그러했듯이 다른 인간들과 섞이지 않고 전부 모여서 살았다면, 정부는 통상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 편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연법에 의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근거하여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에 대한 후견인적 지위에서 자식들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의 처벌에 순순히 복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식들은 그들이 누군가를 처벌할 차례가 되면 모두 아버지와 힘을 모아서 범죄자에 대항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그의 판결을 집행할 권력을 부여하였을 것이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가족 성원모두에 대한 입법자와 통치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105절)

아버지는 신뢰를 받기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애정은 그의 보호 하에 있는 자식들의 재산과 이익을 확실히 지켜주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복종하던 습관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가 거의 피할 수 없는 제도여서 그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지배자로서 옹립해야 했다면 자신들의 아버지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었을 것이다.

“처음 유년기 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1인에 의한 지배에 익숙하게 하는 한편, 그 통치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능숙하게 그리고 애정과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경우,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정치적 행복을 확보하고 보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가르쳐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그들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며, 또 경험을 통해서 용이하고 안전한 것으로 밝혀진 정부형태를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덧붙인다면, 사람들에게 군주제는 간단하고 가장 명료한 정부형태였다.” (107절)

이러한 추측은 역사적 기록과도 일치한다. 세계 여러 민족이나 부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통상 정부가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크는 이러한 사실이 자신이 주장하는 정부의 기원 즉 사람들의 동의에 기반해서 성립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나의 주장 곧 정치사회의 시작은 단일의 사회를 결성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동의에 의존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단체로 결성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106절)

로크는 그 이유로 1)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에 기원을 둔 군주제조차 실상은 선거제 혹은 선출제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2) 이러한 소규모 정치 공동체는 소박하고 가난한 생활상의 평등으로 인해 분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법률이 필요 없었기에 이러한 지배형태를 떠었으며, 3) 이러한 지배형태에서 사람들은 전제적 지배의 압박을 느끼지 않았으며, 4)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배는 내부의 갈등 해결보다는 외부의 침입에 대한 효과적 대처의 필요성 때문에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1)과 관련하여 로크는 “이 같은 통치형태(군주제)는 어떤 국가가 처음으로 창설되었을 때 아마도 아버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애초부터 한 사람의 수중에 권력이 장악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단일의 인물이 통치하는 정부형태가 계속된 이유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모든 소군주국들은, 곧 거의 대부분의 군주국들은 그 초창기에는 대개 선거제였으며, 적어도 때로는 그러했기 때문이다” (106절)라고 기술하고 있다. 2)와 관련하여 로크는 “당시의 풍습, 그들의 소유물, 또는 생활양식으로 인해 그것을(1인의 권력 남용

을) 두려워하거나 대비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을 그러한 정부형태에 내맡긴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말한 것처럼 가장 명료하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면한 상태와 상황(처벌을 위한 다양한 법규가 필요 없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107절)라고 기술하고 있다. 3)과 4)와 관련하여 로크는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사회를 결성한 셈이므로 서로간에 지면이나 우정, 게다가 상호간의 신뢰가 없었을 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보다는 외부인에 대해서 더 많은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걱정과 관심은 외적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들을 지킬 것인가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들이 그러한 목적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부형태에 자신들을 맡기고자 한 것 그리고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을 선출하여 전쟁에서 외적에 대항해 그들을 지휘, 인솔하게 한 것, 나아가 주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통치자를 정한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107절)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초기의 인간은 군주제 형태의 지배체제를 택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사람들의 자발적 선택과 선출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초기의 군주제가 인민의 동의에 기초해 있음을 로크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본래 자유로운 인민들은 스스로의 동의에 의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통치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몇몇 가족이 서로 결합하여 정부를 창설하였다. 어느 경우에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통치권을 한 사람의 수중에 맡겼으며 한 인물의 통치하에 있기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그의 권력을 제약하거나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정직성과 신중함을 믿어 그 권력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은 군주제가 신권(神權)에서 비롯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은 최근의 신학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권이 지배권을 가진다든가 모든 정부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도 통용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으로도 역사가 최대한 보여준 바에 따라 우리가 ‘정부의 모든 평화적인 시작은 인민의 동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이

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족하다.” (112절)

군주제에 대한 로크의 비판은 『제1론』 즉 필머의 『족장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다시 보강되었을 것이며, 이는 ‘배척 위기’를 둘러싸고 왕이나 토리 당의 입지를 약화하고 휘그 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반론: 자유의 부재

이 반론의 핵심적 내용 즉 로크가 말하는 인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치 사회의 수립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이런저런 유형의 정부 아래서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를 세울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인간은 [...] 일정한 정부 하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시작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그의 아버지나 군주에 대한 신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종과 충성이라는 항구적 구속 하에 산다.” (114절)

로크는 이에 대해 만일 이 반론이 유효하다면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합법적인 군주국들이 이 세계에 출현하게 되었는가?” (113절)라고 되묻고 있다. 그리고 로크는 어떤 사람이 특정 국가에 태어난다고 해서 자신의 동의 없이 특정 군주에게 자연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성경의 역사에서든 세속의 역사에서든 일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지배권과 자신들이 자라난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거기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새로운 정부를 창설하였다는 실례만큼 빈번히 관찰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15절)

다시 말해 아버지가 협정을 통해 특정 정치체를 설립하고 그 곳에서 통용되는 실정법에 복종하기로 동의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자식들에게도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이들의 동

의를 획득할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의무는 이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특정 국가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나라의 신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의 자유를 양도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스스로 맺은 협정이나 약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준수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협정에 의해서 그의 자식들이나 후손을 구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들도 성인이 되면 아버지처럼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행위도 기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자식의 자유를 양도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116절)

다만 로크는 아들이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계속 향유하고자 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 자산은 아버지의 소유이므로 소유에 따른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유의 권리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향유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즉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가 아니면 통상 그의 아버지의 소유물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7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날 때 이미 일정한 정부아래 있다고 할 지라도 오직 자유인들의 동의만이 그들을 그 정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자유로운 성인이 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7. 부권, 전제 권력, 정치 권력

이상에서 고찰된 정치 사회의 가부장적 기원에 대한 비판, 정치 권력과 전제 권력, 전제 권력과 자연 상태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드러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로크에게 부권 혹은 친권은 ‘자식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

으로서 양친이 자식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을 말한다.

"그것은 양친이 자식들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그들이, 그것이 자연법이든 나라의 국내법이든 스스로를 다스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정되는 지식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가지는 권력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법 아래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법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친의 가슴속에 하느님이 심어준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자비심은 친권이 가혹하고 자의적인 통치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지원, 훈육,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든 내가 입증한 것처럼, 그 권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 그러므로 부권은 자연스러운 통치이며, 결코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과 지배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권력은 그 자식의 재산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자식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170절)

2) 전제적인 권력이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리으로서 그가 원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협정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한 자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러한 권력을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공격자가 다른 사람과 전쟁상태에 들어갈 때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몰수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172절)

그러므로 로크에 따르면 정의롭고 합법적인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만이 전제적인 권리에 종속된다. 이러한 전제 권리의 지배를 받는 상태 즉 노예 상태는 협정의 산물이 아니며 전쟁상태의 지속에 다름 아니다.

3)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회의 수중에 넘긴 것이며, 구성원들의 복지와 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스스로가 정한 통치자에게 넘긴 권력’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회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회에 양도하는 이 권력은 이제 그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그리고 자연이 허용한 그러한 수단을 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그의 이성이 내린 최선의 판단에 따라 그 자신과 나머지 인류를 보존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이 권리의 목적과 척도는 그것이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인류사회의 모든 성원, 곧 인류 일반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정자의 손에 있을 때에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하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 그 권력은 단지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에 형벌을 부가하는데, 그 형벌이란 전체의 보존을 위해서 너무나 썩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한 부분을 위협하는 부분만을 잘라내는 것이다.” (171절)

이상의 내용을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것, 곧 부권은 자연이 양친에게 준 것으로, 그것은 미성년기 동안 자식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권력 즉 전제 권력은 권리의 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인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것은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세 번째 권력 즉 정치 권력은 자발적인 합의에 기반 한 것으로 통치자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것은 신민들에게 그들의 재산의 소유와 사용에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신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들 세 개의 권리 가운데 부권은 통치자의 권리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전제적 권리은 통치자의 권력을 훨씬 초과한다. 또 절대적 지배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든 노예제가 재산과 양립할 수 없듯이 시민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

“부권은 미성년임으로 인해 자식이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정치 권력은 인간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

우에 발생하고, 전제적 권력은 그러한 재산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174절)

8. 다수결의 원리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그들 상호간에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할 때, 이 합의 자체에서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서로 합의하여 정치체를 결성할 때 이 최초의 계약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체결된다. 그리고 정치체의 결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정치체의 바깥에, 즉 ‘자연상태에서의 자유’ 상태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결성된 공동체만을 떼어놓고 살펴보았을 때 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공동체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 내의 다수(majority)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숫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서 공동체를 결성했을 때,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한 단체(one body)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동체는 일체(一體)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그 구성원들의 동의뿐인데, 한 단체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커다란 힘, 곧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96절)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 공동체로서 활동하거나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로크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여 하나의 정부 하에 있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구속될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그

렇지 않다면 그가 이전의 자연상태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고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의 사회를 결성한 원초적 계약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민주적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다수결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만장일치제이다. 로크는 만장일치의 방법이 개인의 건강상의 허약함, 업무의 잡다함, 의견이 다양성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는 방법임을 분명히 한다.

“만약 다수의 동의가 전체의 결정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개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오직 개개인 모두의 동의만이 어떤 결정을 전체의 결의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건강상의 허약함이나 업무상의 잡다함을 고려할 때, 그러한 동의는 획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숫자 면에서 그러한 일들은 공동체의 인구수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모든 인간집단에서 불가불 일어나게 마련인 의견의 다양성과 이해 관계의 대립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조건에 입각해서 사회를 결성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며 [...] 다수가 나머지를 구속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회가 일체로서 행동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즉각적으로 해체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98절)

따라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을 벗어나 공동체를 결성한 사람들은 어떤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동체 결성에 필요한 모든 권력을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권리의 양도는 하나의 정치 사회를 결정하고자 단순히 합의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야말로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결성하는 개개인들간에 실제 체결되고, 또 반드시 체결될 필요가 있는 협정의 전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치 사회든지, 그것을 시작하고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다수결을 산출할 수 있는 일정수의 자유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사회를 결성하기로 동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99절)

로크에 따르면 이러한 협정과 동의만이 세상에서 모든 합법적인 정부의

기원이 된다. 그런데 고프에 따르면 만일 소수파가 다수파의 ‘커다란 힘’에 단순히 압도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로크가 말하는 동의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고프는 헌법 상 중요한 결정에서 대개 단순 과반수를 넘어서는 수, 예를 들어 재적의 2/3 이상을 요구하거나, 소수가 자신들의 견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논의의 기회를 갖게 되면 다수결에 의한 마지막 결정이 진정 공통된 합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로크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p.196-197 참조).

9. 정치 사회의 목적

앞에서 정치 사회의 정의 및 정치 사회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로크에게 정치 사회란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자신이 자연적으로 갖는 권리에 대한 집행권을 공공체에 양도한 것을 말하며, 모든 정치 사회는 반드시 자유로운 성인의 자발적 동의와 협정을 토대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 이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이러한 자유를 포기하고 일정한 법률의 지배를 받는 정치 사회를 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크는 자연권이 보장하는 권리를 자연 상태에서는 향유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또 끊임없이 침해당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만약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토록 자유롭다고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체 그는 왜 그러한 자유와 결별하는 것일까? 왜 그는 이 같은 지배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타인의 권력의 지배와 통제하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고 모든 사람이 그와 평등하며, 그들의 대부분이 형평과 정의의 엄격한 준수자들이 아니므로 그가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안하고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비록 자유롭지만 두려움과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 (123절)

그리고 정치 사회의 결성 혹은 가입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의 핵심은 생

명, 자유, 자산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재산(property)의 보존이다.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124절)

10. 자연상태에 결여된 것 혹은 정치사회에 추가된 것

이미 앞서 자연상태와 시민사회 혹은 정치사회를 비교한 바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치사회의 목적에 비추어 이 두 상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재산의 보존을 곤란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정치사회에 비해 자연상태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로크가 제시하는 것은 공통의 척도로서 법률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이 없다.” (124절)

주지하다시피 로크의 자연상태는 흡스와는 달리 자연법의 지배를 통해 그 나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로크는 비록 자연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명백하고도 이해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자연상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지하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상반될 경우 자연법을 자신들을 구속하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한가지 자연상태에서는 권위를 가진 무사공평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이 없다.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재판관이자 집행자인데, 인간은 자신에게 편파적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사건인 경우에는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태만하기 십상인 반면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격정이나 복수심으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거나 흥분하기 십상이다.” (125절)

마지막으로 자연상태에서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자연상태에서도 권력이 존재한다. 내적 침략을 막기 위한 법률 즉 재산보존을 위한 법률 및 외적 침략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로 정의되는 공공적인 정치 권력과 구분되는 자연상태에서의 권력을 로크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권리이다. 또 한 가지는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이다. 자연상태에서의 첫 번째 권리 즉 무엇이든 자신과 여타 인류를 보존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 바를 행하는 권력을 정치사회에서는 포기하는 데 이는 자신과 그 사회의 여타 사람들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연상태에서의 두 번째 권리 즉 범죄에 대한 처벌권을 포기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선을 우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연적 권리에 대한 개인적 집행권을 포기하고 사회적 집행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공동체 전체의 힘을 통한 보호는 물론, 동일한 공동체에서의 타인이 노동, 조력 및 교제로부터 많은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는 사회의 선, 변영 및 안전에 필요한 만큼 자신을 부양하는 데에 사용하던 자연적 자유를 내놓아야 한다.” (130)

로크는 이러한 양도가 상호적인 것이기에 필요한 것인 동시에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로크는 이러한 양도의 전제 조건 혹은 공적 권리 사용의 제한 조건을 분명히 한다. 공적 권리의 집행은 재산의 보존, 평화의 보존과 같은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상태에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력을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고 공동체의 안보를 침입이나 침략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

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131절)

이러한 정치 권력 행사의 제한 조건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뒤에 나올 국민저항권에 대한 옹호논변으로 알려진 정부의 해체에 대해 로크가 자신의 입장은 정당화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V. 정부 형태와 정부의 구성

1. 정부의 형태: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로크에서 정치사회의 형태 즉 정부의 형태는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132절). ‘완전한 민주정’은 공동체의 모든 권력을 다수가 장악하여 그 모든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이 임명한 관리가 법률을 집행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권을 선택된 소수나 이들의 후계자가 장악하는 것이 ‘과두정’이며, 한 사람의 손에 맡긴 것이 ‘군주정’이다. 군주정은 다시 군주와 그의 상속인들에게 입법권이 맡겨진 ‘세습 군주정’과 살아 있는 동안에만 군주에게 맡기고, 그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권리가 다수에게 돌아가는 ‘선거 군주정’으로 나뉜다.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부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2. 권력 분립: 입법권, 행정권, 연합권

로크에게는 몽테스키외에서처럼 명백한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찾아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정부의 기능에 대한 분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커(E. Barker)에 따르면 로크가 입법부와 합동의 행정-연합부를 구분하였지만, 미국 헌법처럼 그 어느 기관도 다른 기관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곧 우리가 통상 권리 분립으로 이해하는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로크는 명시적으로 의회의 최고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O.F. Gierke, 1934, ii, p.359 주석 참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오늘날 행정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행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술하고 있다. 로크에게 행정권과 독립된 사법권의 위치와 지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그래서 바커의 지적에 따르면 로크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권력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이 두 권력이란 입법권과 행정권인데, 행정권은 사법권을 포함하며, 입법권이 공포한 법률 하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대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29 참조). 집단이나 국가의 연맹과 동맹을 뜻하는, 오늘날로 보자면 외교, 안보와 관련된 권력을 뜻하는 연합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굳이 로크 정치 이론에서 사법권의 위치를 찾아보자면 그것은 집행권 즉 행정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프 역시 로크에게 사법권이 행정권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 고프는 오늘날 우리가 행정관리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부의 많은 활동들이 실상 17세기에는 재판소에 맡겨졌으며, 당시 재판관의 기능은 사법적인 것 못지 않게 행정적이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211 참조).

로크에게 입법권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 (143절)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의 제정은 단기간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입법권은 적법하게 소집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리이며, 이들은 법률 제정이 끝나면 다시 흩어져서 다른 신민과 꼭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쳐지로 되

돌아간다. 법률의 제정이 단기간에 가능한 반면 법률의 효력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러한 법률의 지속적 효력은 법률의 지속적 집행에 달려 있다. 행정권이 분리되는 것은 이에 근거한다.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144절)

그리고 로크는 또 하나의 권력을 구분한다.

“모든 국가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권리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권리가 모든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리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내에서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여전히 독자적인 인격체이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의 법률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나 여타 인류에 대해 그들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며, 그 단체는 이전에 구성원들이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인류에 대해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과 사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공공체의 의해서 처리된다. 그리고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침해에 대해서는 전체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전공동체는 그 밖의 모든 국가들이나 그 공동체 밖의 인간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상태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 (145절)

이처럼 특정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혹은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 대해 갖는 관계는 자연상태에 해당하며 이들 관계를 지도하고 안내할 방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준에서 즉 공동체와 공동체 혹은 공동체와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구성되는 권리가 로크가 말하는 ‘연합적 권리’ (federative power) 즉 연합권이다. 이러한 권리의 내용은 “전쟁 및 강화의 권리와 연맹 및 동맹의 권리 그리고 국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및 공동체와 모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146절)을 말한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을 구분하였듯이, 집행권과 연합권을 구분한다.

“이들 두 개의 권력, 집행권과 연합권은 그 자체로서는 참으로 상이한 것이다. 즉 전자는 사회 내에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의 국내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며, 후자는 대외적으로 사회가 이득이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다루는 권력이다. 하지만 양자는 거의 항상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권이 잘 행사되느냐 또는 잘못 행사되느냐는 국가에 대한이 중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집행권과는 달리 미리 제정된 상비적인 실정법에 의해서 규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합권이 공공선을 위해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신중함과 현명함에 일임되어야 한다. 신민들 상호간에 관계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마땅히 그들의 행위에 앞서 미리 제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국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것은,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의도 및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들의 신중한 재량에 일임되어야 한다.” (147절)

다시 말해 집행권과 연합권을 구분하는 것은 전자가 국내의 구성원과 관계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국외의 상대와 관계되는 것이며, 또 한가지 전자가 미리 마련된 실정법에 토대를 둔 것이라면 후자는 담당자의 개인적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이와 관련해서 특히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크지만 국제관계에서 통용되는 법률이 오늘날처럼 구비되어 있지 않던 로크시대의 국제 정치 환경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통치 권력과 관련해서 로크는 두 가지 입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로크는 몽테스키외처럼 세 개의 권력을 말하고 있지만 7그의 세 개의 권력인 입법권·행정권·연합권은 몽테스키외가 구별한 세 개의 권력인 입법권·행정권·사법권과는 상이한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삼권분립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바로 몽테스키외이다. 2) 로크는 부수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종종 분리된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분리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의 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가 주권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주권을 무언가 단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최고의 권력으로서 입법권의 범위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 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입법권 자체마저 지배하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첫째 조항은 사회의 보존이며 공공선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존이다.

“입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일단 그 권력을 위임한 자들의 수중에서는 성스럽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 밖의 다른 사람이 내린 어떠한 명령도, 어떤 형태로 표현되건 또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발해지건 상관없이 공공이 선출하고 임명한 입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률로서의 효력과 의무를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승인이 없으면 법률은 그것이 법률이 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134절)

그러므로 로크에 따를 때 어느 누구도 사회 자체의 동의나 사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의 동의가 없이는 사회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행해야 하는 모든 복종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이 최고의 권력 즉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입법부가 명실상부 최고의 권리이지만 여기에는 네 가지 제한이 있다.

1) 아무리 입법부라 하더라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할 수는 없다.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또 그러한 권리가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데 결합시킨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에 양도한 것 이기 때문이다.” (135절)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노예 계약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곳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입법부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에 양도한 것 이상의 권력을 가질 수 없는데, 자연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리 즉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치 사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자의적인 권리에 종속 시킬 수 없다. 그리고 삶은 자연상태에서 타인의 생명, 자유, 소유물에 대해서 아무런 자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자연법이 그 자신과 나머지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부여한 권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이 그가 공동체에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입법권에 양도하고 양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입법권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 그 권력은 그 최대한에서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것은 보존 이외에 그 밖의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는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의도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자연법상의 의무는 사회에서도 중단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좀 더 다듬어지고, 그 의무에 인정법(人定法, human law)이 부과한 널리 공포된 처벌이 부가됨으로써 그 준수가 강제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 입법자들을 포함하여 만인에게 영구적인 규칙으로 남아 있다.” (135절)

이것이 뜻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보존의 권리는 자연법 즉 신의 의지에 따라 타당한 것이며 이는 자연상태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유효하다는 것이다.

2) 두 번째 제한은 입법권은 절대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민들은 자신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포기하거나 사회에 자신들을 구속시키고자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권리와 재산에 대한 명시적 규칙을 통해, 다시 말해 선포되고 승인된 안정적 법률을 통해 사회를 결성하였는데, 입법권이 사람들의 일시적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이들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공포된 영속적인 법 그리고 널리 알려진,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에 의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신민들의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 자연법은 문자화된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 이외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격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그것을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 적용하더라도 확립된 재판관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의 권리를 확정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봉사해야 함에도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연법의 재판관이고 해석자이며 그 집행자인 데다가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자신의 편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도 통상 개인 혼자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해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36절)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통치권은 즉흥적인 명령과 불확실한 결정이 아니라 선포되고 승인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인류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을 다중의 결합된 권력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즉흥적인 생각이나, 무절제하고 그 순간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의지에 근거한 터무니없고 무체한적인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인류는 자연상태에서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진 모든 권력은 오직 사회의 선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확립되고 선포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137절)

이는 통치자나 피통치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통치자 입장에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통치를 행함으로써 권력의 유혹에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비통치자 입장에서도 법률을 통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률의 한도 내에서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로크가 상정한 입법권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사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인민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또 당연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인 재산을 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잃게 되는 셈이다 [...] 그러므로 사회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것인 재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재산이나 그 일부를 그들로부터 그들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전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의 동의에 반하게 내게서 그의 뜻대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아무런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입법권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 일부를 제멋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138절)

이처럼 정부가 누구의 손에 맡겨지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권리를 선택한 것이라면, 정부 형태가 무엇이 되었건, 군주건 귀족이건 하원이건, 인민들의 재산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가지고는 있다 할 지라도 신민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의 일부라도 취할 수 있는 권력을 결코 가질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인민의 재산의 일부를 취한다는 것은 바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이며 세금 부과에는 반드시 인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입법권에 관한 네 번째 제한은 입법권 자체가 결코 양도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이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들만이 국가의 형태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행위는 입법부를 구성함으로써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할 자를 임명함으로써 수행된다. 그리고 인민이 우리는 통치에 복종할 것이며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배 받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 인민들 역시 그들이 선출하여

그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법률에도 구속될 수 없다.” (141절)

즉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있을 뿐이지 스스로가 ‘입법자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입법자를 만드는 권한은 오직 인민에게만 있으므로 앞서 언급되었듯이 입법부는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로크는 별도의 절을 통해 이상의 네 가지 제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것들이 사회가 입법부에 위임한 신탁의 한계이며, 그 정부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신법과 자연법이 모든 국가의 입법권에 부여한 한계이기도 한다. 첫째, 입법부는 공포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야 한다. 이는 그 법률이 사건에 따라 다르지 않고 부자나 빈자, 궁정의 특권층이나 시골의 농사꾼에게나 단일한 규칙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러한 법률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창안되어야 한다. 셋째, 입법부는 인민들 스스로가 표명하건 아니면 그들의 대표자들이 표명하건, 인민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그 밖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이전해서는 안 되며, 또 이전할 수도 없다. 또한 인민이 그 권력을 설정한 곳 이외의 다른 곳에 설정해서는 안 되며 또 설정할 수도 없다.” (142절)

이러한 로크의 내용 요약과 앞서 언급된 사항들을 비교해 보면 첫째 제한과 관련해서 뉘앙스의 차이를 볼 수 있다. 1)에서 언급된 재산권의 절대성에 대한 내용이 요약 부분에서는 빠지고 법치를 강조하는 2)의 내용이 요약 부분에서는 첫째 제한으로 위치가 바뀌어 나온다. 요약 부분의 둘째 제한 즉 인민의 복지에 대한 언급은 사실 1)에서 4)까지 고루 포함된 내용을 모은 것이며 4)의 내용과 요약 부분의 넷째 제한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4. 대권(大權, prerogative)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 외에 대권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어 강조한다. 사전적 의미로 대권이란 ‘국가 원수가 국토, 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 (두산세계백과사전)을 말하는데 로크에게 대권이란 ‘군주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권력이 필요한 이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불확실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법률이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명백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이 경우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160절)으로서 대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권은 집행권 혹은 행정권의 수반에게 필요한 권력인 것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이 행정권을 가진 자의 재량에 맡겨질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입법자들이 공동체에 유용한 모든 것을 예견하고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집행자는 국내법이 아무런 지침을 규정하지 않은 많은 경우에, 입법부가 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 소집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공통의 자연법에 따라 그 법을 활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결코 규정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행정권을 가진 자가 재량에 의해서 공공선과 공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필히 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아니 법률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행정권 또는 오히려 자연과 국가의 기본법, 곧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엄격하고 경직된 법률의 준수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많은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화재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웃사람의 집을 결코 허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159절)

로크는 이러한 대권의 전형적 예로서 통치자가 법의 가혹한 적용을 완화시키거나 범법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력을 듣다.

그러나 이러한 대권 즉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많은 사안에 대한 행정권의 재량’ (160절) 혹은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조치’ (165절) 혹

은 ‘규칙에 근거함 없이 공공선을 실천하는 권력’ (166절)에도 제한이 따른다. 이 권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선택과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되는 동안은 의심할 여지없는 대권이며 결코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민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은 대권이 원래의 취지대로 곧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인민의 복지에 명백히 반하지 않게 행사되는 한 대권의 행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은 군주가 과오 때문에 아니면 아첨에 이끌려 이 대권을 공공선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경우 행정권의 집행자에게 최대한 재량의 여지가 남겨졌던 대권에 대해 실정법을 통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만일 이러한 제한이 가해진다면 대권의 정의 내지 규정과 상충되며 대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성립하기 힘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대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를 실정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더 이상 명실상부한 대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로크는 이에 대해 인민이 대권의 어떤 부분을 실정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은 군주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그 어떠한 것도 빼앗지 않으며, 단지 그들이 무제한적으로 그(현재의 군주)와 그의 조상들(이전의 군주들)의 수중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사하도록 남겨둔 권력을 실제 그가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 그것이 그들이 의도한 바와 다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63절)

즉 대권이란 “인민이 군주에게 선량한 일을 할 권력을 준 것” (164절)이지 “인민에게 해악을 저지르는 자의적인 권리” (163절)이 아닌 것이다. “대권은 인민이 자배자에게 법률이 침묵을 지키는 사항에 관해 그리고 때로는 법률의 직접적인 문구에 반하여서까지 자배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공공선을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할 것을 허락한 것에 다름 아니다” (164절) 그럼에도 우둔하거나 부패한 군주는 그의 전임자들이 법의 지시 없이 행사하던 권력을 공직상의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하는 고유한

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공공선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행사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도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과연 대권이 공공선을 위해 행사되었는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로크는 이에 대해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다. 이는 제3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궁극적 재판관이라는 의미다.

“그러한 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권과 그 소집을 행정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입법권 사이에는 지상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들의 손에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을 노예로 삼거나 과멸시키고자 할 때, 입법부와 인민 사이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상의 재판관이 없고 단지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인민은 다른 아무런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시도를 함에 있어 통치자들은 인민이 결코 그들의 수중에 위임한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일단의 인민이나 일개 개인이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정당한 권리가 없는 권리의 행사에 직면해 있지만 지상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충분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하늘에 호소할 자유가 있다.” (168절)

로크에게 사회가 사법적 권력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며, 입법부는 법을 수정하고 합리적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것과 제휴하면서 활동하는 것이라면 대권은 법을 어기고서라도 어떤 결단 행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 힘은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문명을 만들었던 것으로서 마키아벨리가 신봉하였던 군주와 같이 신질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권에 대한 로크의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Hughes는 지적한다(M. Forsyth, 1993. p.209 참조). 대권은 헌법이 병들었을 때 사용하는 독한 치료제와 같은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상용하는 뺨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정복과 찬탈

1) 정복

정복이 외국에 의한 찬탈이라면, 찬탈은 대내적 정복에 해당한다. 찬탈은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빼앗는 것” (197절)이며 찬탈은 그것이 찬탈인 한 단순한 인물의 변경에 그치고 정부형태나 규칙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정복은 국가간의 전쟁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자신의 전제적 지배 아래 두게 된다. 그러나 로크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정복의 경우라도 정복의 권리는 오직 전쟁에 가담한 자들의 생명에만 미치며, 그들의 자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정복자가 입게 된 손해와 지출한 전쟁비용을 배상 받기 위해서만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무고한 피정복자의 부인과 자식의 권리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부당한 정복의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다른 사람과 전쟁상태를 도발하여 부당하게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침략자가 그러한 부당한 전쟁으로 정복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강도 해적이, 그들이 무력으로 굴복시킨 자들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사람들이 불법적인 힘의 강요 때문에 받아들인 약속에 구속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도가 나의 집에 침입하여 단도를 나의 목에 들이대고 나의 자산을 그에게 양도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한다면, 이로 인해 그는 그것에 대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가? 나에게 복종을 강요한 부당한 정복자는 그의 칼에 의해서 그러한 자격을 가질 뿐이다. 가해와 범죄는 그것이 왕관을 쓴 자가 행하건 시시한 악당이 행하건 똑같은 것이다. 침략자의 칭호나 부하들의 숫자로 인해 범죄의 속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큰 강도들은 작은 강도들을 처벌하여 복종시키지만, 그들 자신은 승리의 월계관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세상에서 정의의 여린 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공격자를 처벌해야 할 바로 그 권력을 그들 자신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6절)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쟁 다시 말해 상대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싸움에서 승리한 편의 권리인가? 합법적인 전쟁에서 정복자의 지위는 무엇인가? (1) 로크는 먼저 자기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 정복자가 아무런 지배권을 갖지 못함을 밝힌다.

“그가 자신과 더불어 정복에 참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복을 이유로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편을 들어 싸운 사람들은 정복으로 인한 어떠한 고통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적어도 이전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인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통상 그들은 정복자의 칼이 가져다주는 전리품과 기타 이득의 일부를 정복자와 공유하며 향유한다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복에 참가한 인민들은 정복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단지 그들이 지도자의 승리를 위한 희생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써서는 안 된다.” (177절)

(2) 이러한 논의의 결과 정복자는 오직 자신에 대해서 부당한 힘을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하고 협력한 자에 대해서만 권력을 갖게 된다고 로크는 생각한다.

“인민은 부정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부정의한 일을 하라고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 왜냐하면 인민들은 스스로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없기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 그들이 실제 전쟁을 부추긴 것 이상으로 부정의한 전쟁에서 저질러진 폭력과 부정의에 대해 죄가 있는 것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통치자가 그 인민 전체에게 또는 일부 동료 신민들에게 가한 폭력이나 탄압에 대해서 인민들 자신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민들은 후자의 경우에 그러한 권력을 위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에 경우에도 그러한 권력을 위임한 바 없다. 하지만 정복자들이 그러한 구별을 내리기 위해서 고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며, 그들은 기꺼이 전쟁의 혼란이 그러한 구분을 일거에 지워버리도록 방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정당함의 문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피정복자의 생명에 대한 정복자의 권력은 오직 피정복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지속하기 위해 힘을 사용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권력을 그러한 힘의 사용에 협력한 자들에 대해서만 가질 뿐이다. 그 밖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무고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

친 바가 없는 그 나라의 인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을 가지지 않으며, 그들의 생명을 몰수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마치 그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나 도발행위를 저지름 없이 그와 더불어 순탄하게 살아온 자들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79절)

(3) 정복자는 피정복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전제적 권력을 가지지만 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로크는 분명히 구분한다.

“정복자가 정당한 전쟁에서 굴복시킨 자들에게 가지는 권력은 완전히 전제적이다. 정복자는 전쟁상태를 도발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권리를 몰수당한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소유물들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는 세상의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언뜻 보아 특이하게 보이는 교의이기도 한다. 나라의 지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저러한 자가 그 나라를 정복하였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 정복은 마치 별도의 수고스러움이 없이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강력한 자들의 관행이 비록 제아무리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복자가 칼을 내밀고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정복자의 복종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지배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 (180절)

그렇다면 왜 로크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일까? 전쟁에서 지는 것은 생명은 물론이고 자산까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닌가?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해 생명에 대한 권리는 가지면서 자산에 대한 권리는 갖는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더구나 전쟁에서 자산상의 피해나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로크도 이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력 혹은 힘의 부당한 사용인 점이라는 것이다.

“모든 전쟁에서 무력과 손해는 통상 복잡하게 얹혀 있는데, 침략자는 그가 전쟁을 일으킨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자산을 침해하지 않는 적이 거의 없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오직 무력의 사용만이 사람을 전쟁상태에 몰아 넣는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건 아니면 조용히 기만적으로 피해를 입히고는 배상을 거절하면서 무력에 의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건, 어떤 사태를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힘의

부당한 사용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무력으로 나를 쫓아내거나 평화적으로 들어와서 무력으로 나를 내쫓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그리고 양 편 모두가 복종의 의무를 지는 공통의 재판관이 지상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다른 사람과 전쟁상태에 몰아넣는 것은 힘의 방탕한 사용이다. 그러므로 그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이성을 버리고 야수의 방식에 따라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무력을 사용한 상대방에 의해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인간이 그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납고 짖주린 야수를 살해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말이다.” (181절)

그러나 이처럼 부당한 전쟁을 도발한 자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다고 해서 자산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한 부인과 자식의 권리가 자산에 대해서는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로크가 내세우는 이유이다.

“아버지의 과오는 자식들의 잘못이 아니며, 그들은 아버지의 잔인함과 부정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평화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와 폭력에 의해서 오직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만을 몰수당할 수 있을 뿐이며, 그가 저지른 죄나 감수해야 하는 파멸에 그의 자식들까지 연루시킬 수는 없다. 가급적 최대한으로 모든 인류의 보존을 꾀하는 자연이 자식들이 짖어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하도록 만든 아버지의 재물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속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복에 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향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침략자가 사용한 야만적인 무력이야말로 상대방에게, 해로운 동물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의 생명을 박탈하고 그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실제로 입게 된 피해만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권리를 준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대로상에서 나를 습격한 도둑을 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다 가치가 적은 그의 돈을 빼앗고 그를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강도 짓을 한 셈이 될 것이다. 그가 무력을 사용한 것 그리고 그가 자초한 전쟁상태로 인해 그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그의 재물에 대한 어떠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182절)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정복의 권리는 오직 전쟁에 가담한 자들의 생명에만 미치는 것이며, 그들의 자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복자가 입게 된 손해와 지출한 전쟁비용을 배상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산에까지 미치는데, 그 경우에도 부인과 자식의 권리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비록 정복자가 최대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명분이 아무리 뚜렷하고 상대의 잘못이 크다고 할지라도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피정복자가 몰수당해야 마땅한 것 이상을 정복자가 취할 수는 없는데, 생명은 취할 수 있는 것이되 자산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피정복자의 생명은 승자의 자비에 맡겨져 있으며, 그의 노무와 재화를 승자는 배상을 받기 위해서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정복자의 처자식의 재무는 취할 수 없다. 그들 역시 피정복자가 향유하던 재물에 대한 자격이 있고 그가 소유하던 자산에 그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자연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배상을 할 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내가 부당하게 얻은 것을 무력으로 방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침략자가 되는 전쟁상태가 된다. 내가 정복당하면, 나의 생명은 몰수되어 상대방의 자비에 맡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처자식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전쟁을 도발하지도 않았으며, 그 전쟁을 지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의 생명을 몰수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들은 내가 몰수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처는 나의 자산에 대한 일정한 뜻이 있으며 그 것 역시 내가 몰수당하게 할 수 없다. 나의 자식들 역시 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노동이나 재산으로부터 부양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복자는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식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자산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 자연법의 근본조항은 가급적 최대한 만인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양편, 곧 정복자의 손실과 자식들의 부양을 다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양이 없으며, 가진 것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완전한 만족을 일부 포기하고, 그것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한 자들의 절박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자격에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183절).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

터 입은 어떠한 손해도 정복자에게 피정복자의 후손들의 재산을 박탈하고 그들의 유산을 빼앗을 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복자는 비록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정복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의 편에 가담한 사람들,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로서 그에게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대항한 자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지 않는다.” (185절)

이 모든 논의로부터 무력에 의해서 피정복자에게 부과되는 정복자의 통치는, 정복자가 전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의 피정복자나 그러한 권리를 자기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항하여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피정복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는 로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중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인신에 대한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물을 상속받을 권리이다.

“이중 첫 번째 권리에 의해서 인간은, 비록 일정한 정부가 통치하는 속에서 태어나지만, 본래 어떠한 정부에 대한 복종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합법적인 통치를 배척한다면, 그는 또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에게 속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그의 조상들의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라면, 그이 조상들로부터 그에게 내려오는 소유물 역시 포기해야 한다. 두 번째 권리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주민들이든 정복을 당한 후 자유로운 동의에 반하여 정부를 강요당한 자들의 후손들로서 조상들로부터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비록 그 나라의 재산 소유자들에게 무력으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정부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상들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정복자가 그 나라의 토지에 대한 자격을 가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 정부의 명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들의 후손인 인민이나 그 인민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명에를 벗어 던지고, 무력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찬탈이나 전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권리를 항상 보유하고 있다. 적어도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택에 의해서 동의를 한 정부의 구조하에 살도록 허용할 때까지는 말이다.” (191-192절 참조)

이러한 사실은 더 열악한 가상의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로크는 정당한 전쟁에서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인신에 대한 권력은 물론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정부를 지속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은 추호도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후손들은 자유인들로서, 만약 그가 그들에게 그의 나라에서 살도록 자산과 소유물을 허용하면 그가 허용한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주어진 한도에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속성이란 주인의 동의 없이 그에게서 취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193절)

이러한 사실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나는 군주들이 자기 나라의 법률에 대한 복종의무를 면제받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점, 곧 그들이 신과 자연의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력도 영구법에 대한 복종의무로부터 그들을 면제시킬 수 없다. 그러한 복종의무가 약속의 경우에는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 역시 약속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 인가, 약속 및 선서는 전능한 존재도 읽어매는 구속이다. 아첨꾼들이 세상의 군주들에 대해서 무슨 말로 친양하든, 모든 군주들과 그들의 신민들을 다 합쳐도 위대한 신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양동이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나 저울에 묻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195절)

이상에서 나온 정복에 관한 로크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복자는 만약 그가 정당한 이유를 확보하고 있다면 전쟁에서 반대편을 지원하거나 협조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제적인 권력을 가지며, 그가 입은 손해와 비용에 대해 그들의 노동과 자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전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거나 포로들의 자식들이 있다면, 이 같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들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2) 찬탈

정복이 대외적임에 비해 찬탈이 대내적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정복의 경우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반면, 찬탈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찬탈은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한 것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합법적인 정부에서 통치를 담당할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며, 원래 인민에 기원을 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형태를 확립한 모든 국가는 공적 권리 를 담당할 자를 임명하는 규칙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정한 방법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무정부상태란 아무런 정부형태가 없거나 또는 정부형태를 군주제로 정해놓고도, 권력을 장악하여 군주가 될 인물을 알거나 지명할 아무런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것과 다분히 흡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법이 지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의 어떤 부분이든 담당하게 된 자는 비록 국가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복종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률이 지명한 인물, 결과적으로 인민이 동의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찬탈자 또는 그이 뒤를 이어 계승한 자는 누구든지, 인민이 동의할 자유가 있으며 동시에 그에게 그때까지 찬탈한 권력을 허용하고 인정하기로 실제 동의하였을 때 비로소 자격을 가지게 된다.” (198절)

그런데 찬탈자가 그 국가의 합법적인 군주나 통치자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면 전제로 나아가게 된다.

찬탈이 ‘다른 사람의 권리에 속하는 권력을 가로채어 행사하는 것’이라면, 전제는 ‘정당한 권리를 넘어선, 곧 어느 누구의 권리에도 속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제는 누구든 자신이 그 수중에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되,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별도의 이득을 위해서 행사는 것이다. 전제적 통치자 혹은 폭군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준칙으로 삼으려, 인민의 재산이나 복지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야심을 추구하는 인물을 말한다.

VI. 인민의 저항권(정부의 해체)

1. 정부의 해체와 사회의 해체

인민의 저항권(혹은 정부의 해체)을 옹호하는 로크의 이론이 『통치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로이드 토마스(D.A. Lloyd Thomas)는 『통치론』의 목적이 반란을 정당화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통치론』에서 소유권이나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가 인민의 저항에 대한 논의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 것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실제적인 역사적·정치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 이후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로크가 살던 시대이래 무장한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은 『통치론』에서 인민의 저항권에 부여한 로크의 강조점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D.A. Lloyd Thomas, 1995. pp.57-58 참조). 실제로 이곳에서의 통치 혹은 법에 대해 저항하는 정치적 경험은 반란의 형태가 아니라 시민 불복종의 형태가 중심이었다.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나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이 시민 불복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이 비록 법을 위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통치의 부정이나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행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반란 혹은 혁명과 구분된다. 그리고 『통치론』에 입각해 볼 때 로크는 정부가 정당한 이상 시민 불복종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애쉬크래프트(R. Ashcraft) 역시 로크 정치 이론의 결론을 ‘왕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합법화’ 하는 것으로 보고, 로크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추적하고 있다(Vere Chappell, 1994. p.226 참조).

로크는 먼저 사회의 해체와 정부의 해체를 구분한다. 로크에게서 이때 사회란 정치사회를 말하며, 정치사회가 곧 정부를 뜻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구성하고, 산만한 자연상태에서 나와 하나의 정치사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단체를 결성하여 일체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곧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맺는 협정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결성된 정치사회가 해체되는 유일한 방식은 외국의 군대에 의하여 정복되는 경우뿐이

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을 온전히 독립된 일체로서 유지하고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던 일체감이 필연적으로 소멸하고 모든 사람은 이전에 처해 있던 상태, 곧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유, 또 다른 사회에서 도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가 해체되면, 그 사회의 정부가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정복자의 칼은 종종 정부를 그 뿌리부터 베어내는 것이고 사회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며, 굴복당한 또는 여기저기 흩어진 다중을 사회의 보호와 사회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 (211절)

이렇게 사회가 해체되면 정부도 자연히 해체된다.

“게다가 사회가 해체된 경우에는 정부 역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논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들이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분해되어 날아가거나 지진에 의해서 뒤범벅이 된 채 한 덩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의 골조가 남아 있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1절)

2. 입법부의 변경

그런데 사회의 해체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내부로부터 해체될 수 있다.

A) 입법부가 변경될 때 정부는 해체된다. 그런데 입법부의 변경과 관련하여 로이드 토마스는 로크에게서 이 말 즉 입법부의 변경이라는 말이 인물의 교체인지 법의 교체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1) 기존의 헌법은 유지한 채 이 법 아래서 인민의 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것을 뜻하는지 아니면 2) 기존의 헌법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헌법으로 대체되는 것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D.A. Lloyd Thomas,, 1995. p.61 참조). 여하튼 시민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평화의 상태인데, 그것은 구성원들간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입법부를 통해 심판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전쟁상태가 그들 사이에서는 배제된 상태이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단결하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살아 있는

일체로 되는 것은 바로 입법부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입법부는 국가에 형태, 생명, 및 통일성을 부여하는 영혼이다. 이것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감을 느끼며 또 결속된다.” (212절)

그러므로 입법부가 파괴되거나 해체될 때에는 사회의 해체와 죽음이 뒤 따른다. 왜냐하면 사회의 본질과 일체감은 단일의 의지를 가지는 데에 있는데, 입법부야말로 일단 다수에 의해서 확립되면 그 의지를 선언하고,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설립이야말로 사회의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행위이며, 그 설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체감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인민의 동의와 임명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지도와 그 사람들이 제정한 법의 구속 하에서 마련된다. 만약 인민의 동의와 임명이 없다면, 인민 중의 어느 한 사람이건 여러 사람이건 어느 누구도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인민이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들은 권한 없이 법률을 제정하는 셈이며, 따라서 인민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인민은 다시 복종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 (212절)

로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인민의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다. 즉 인민은 권한 없이 그들에게 무엇이든 강요하는 자들에게 저항할 충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위임으로 공공의지를 선언할 권한을 가진 자들이 거기서 축출되고 아무런 권한이나 위임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찬탈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로크는 인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초래된다고 보고 이를 다시 네 가지 경우로 세분한다.

A-1) 단일의 인물 또는 군주가 입법부가 선언한, 사회의 의지인 법률을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로 대체할 때 입법부는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입법부는 자신이 제정한 규칙과 법률이 집행되고 복종될

것을 요구하는데,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것과 다른 법률이 제정되고 다른 규칙들이 주장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법부가 변경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14절)

누구든지 사회의 기본적인 배치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예전의 법률을 폐기하는 자는, 그러한 법률들이 제정되도록 한 권력을 부인하고 전복시켜서 새로운 입법부를 창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A-2) 로크에 따르면 군주가 정해진 시기에 입법부가 집회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것이 설립된 목적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경우 입법부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입법부의 존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정한 수의 사람들 또는 그들의 집회 자체라기보다는 그들이 사회의 복지를 위한 일을 토의할 수 있는 자유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이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이러한 권리의 적절한 행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박탈하거나 변경한다면, 입법부는 참으로 변경된 것이다.” (215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그러한 명칭에 수반되도록 의도된 권력들이 적절히 사용되고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법부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입법부가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입법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정부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A-3) 군주가 자의적 권리에 의해서 인민의 동의 없이 또는 인민의 공통된 이익에 반해 선거인단이나 선거방법을 변경하면, 입법부가 변경된 것이다.

“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하거나 사회가 지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한다며, 그렇게 선출된 자들은 인민에 의해서 임명된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216절)

A-4) 군주나 입법부가 인민을 외국세력에 넘겨서 예속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입법부의 변경이자 정부의 해체이다.

“인민이 사회에 가입하는 목적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나의 온전한 사회로서 보존되는 것 그리고 그 자체의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인데, 그들이 다른 나라의 권력에 넘겨지면 이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217 절)

이와 같은 통치구조에서 정부의 해체 즉 입법부의 변경이 주로 군주의 책임 때문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군주는 무력, 재정 및 관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최고의 위정자로서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오직 군주만이 합법적인 권한의 명분 하에 그러한 변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반대자들을 정부에 대한 적으로서 위협하고 탄압할 수 있는 권력도 수중에 가지고 있다. 반면 상원이나 하원 같은 입법부나 인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입법부를 변경하고자 시도하면 그것은 쉽게 눈에 띠는 공공연한 반란이 되고 반드시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외국에 의한 정복과 다를 바 없는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군주는 입법부를 해산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군주의 협력 없이는 입법부를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법부가 공포하는 어떤 법령도 군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입법부의 변경이 주로 군주에 의해 행해지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 최고 집행권자의 태만

로크가 제시하는 정부가 해체되는 또 하나의 방식은 B)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고 방기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이다. 이는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고 정부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집행에

의해서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에 제각기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그 업무가 전적으로 정지될 때, 정부 역시 가시적으로 중단되며 인민은 아무런 질서나 결속도 가지지 못한 혼란에 빠진 군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사법행정이 더 이상 없다든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일반 공공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속적인 권력이 더 이상 공공체에 없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않다.” (219 절)

법률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 그것은 법률이 없는 것과 다름없고, 법률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정부가 해체되면 인민은 자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의 인원이나 형태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사회의 보존은 오직 확립된 입법부와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공평한 집행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으므로 예전의 입법부가 없어졌을 때 인민들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보존을 도모하면 된다. 인민들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신탁 위반

정부가 해체되는 또 다른 방법은 C) 입법부나 군주 둘 중의 하나가 자신들에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C-1) 먼저 입법부가 신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자신들이나 공동체의 특정 부분을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주인 또는 자의적인 처분자로 만들고자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행동하는 경우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 했듯이 로크에게서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이 입법부를 선출하고 그것에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재산의 보호수단이자 울타리로서, 그 사회의 각 구성원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데 있다.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 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무력과 폭력에 대비하여 신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공통의 피신처로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에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22절)

C-2) 입법부가 아니라 군주나 최고 행정권자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할 때도 정부는 해체된다. 그에게는 입법부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라는 지위로 인해 이중의 신탁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의지를 사회의 의지로 내세우고자 하면 양자의 신탁을 모두 위반하게 된다. 또 그가 사회의 무력, 재정 및 관직의 대표자들을 부패시키거나 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매수하고 이용할 경우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선거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사전에 약속하거나, 청탁, 위협, 약속 등 기타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인물로 정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도 신탁에 반해 행동하는 것이다. 사전에 투표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제정할 것인가를 약속한 자들을 입법부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입후보자와 선거인들을 통제하고 선거방식을 새로이 뜯어고치는 것이 정부를 그 뿌리로부터 잘라내고 공공의 안전을 그 원천부터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는가? [...] 앞에서 말한 그러한 집회를 준비하고 나아가 그 자신의 의지에 대한 공공연한 지지자들을 인민의 진정한 대표자 이자 사회의 입법자로 내세우고자 기도하는 것은 겪을 수 있는 가능한 사태 중에서 가장 확실히 중대한 신탁위반이며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기도의 완벽한 선언임이 분명하다.” (222절)

신탁위반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인민의 다수가 정부에 대한 신탁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는 상황에서 소수자가 폭력적 혹은 비폭력적 저항을 일으킨다면 로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인민의 다수가 신탁을 유지한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소수가 저항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로크가 이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소수가 다수에 대해 부정의를 시정하도록 호소하기 위해 소수가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도 로크는 인정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로크의 입장은 나치 지배하의 독일 상황에 적용할 경우 곤경에 빠지게 된다. 즉 로크처럼 정부에 대한 다수 인민의 신탁이 존재하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나치 지배하의 독일은 분명 다수의 동의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나치 정권에 대한 인민의 저항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는데, 이는 우리의 상식적 판단에 위배된다(D.A. Llyod Thomas, 1995. p.66 참조). 반면 롤즈가 이러한 저항을 시민 불복종의 일환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차이라 할 수 있다(John Rawls, 1972. pp.371-377 참조).

다른 한편 로크에 따를 때 다수가 신탁을 철회한다면 혹은 정치 공동체의 상당 부분이 저항을 한다면 이러한 저항은 용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640년대의 영국 혁명이나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로크의 입장에서 충분히 정당화된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 전쟁의 경우는 어떤가? 이는 동일한 이유에서 즉 다수가 신탁을 유지하느냐와 관련하여 정당화되기 힘들다. 미국의 독립 전쟁의 경우에서처럼 몇 개의 정치 공동체가 존재할 경우 저항이 정당한지를 결정적으로 가리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로크의 이론이 정치 공동체의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 할 때만 성립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이 특정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의해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크가 말하는 정당한 반란에 대한 이론은 특정 국가 내에서 한 집단이 민족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상황에는 적용될 수가 없거나 이 상황을 설명해 낼 수가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영국과 같이 잘 확립된 정부 하에서, 또 인민의 다수의 신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와 같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 저항하고 별도의 민족 국가를 구성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 적용되거나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를 단위로 했을 때는 다수의 인민이 신탁을 철회하는 것이고, 영국 전체를 단위로 했을 때는 다수가 신탁을 유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D.A. Llyod Thomas, 1995. pp.71-72 참조). 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인민의 저항권을 정당화하는 로크의 이론이 현대적 관점에서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5. 왕의 자격상실

로크는 왕이 사실상 왕이 되지 못하고 인민에 대한 모든 권력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밝힌다. 1) 그 첫 번째는 네로의 경우처럼 왕이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기도하는 경우 즉 자신의 왕국과 나라를 파멸시키고자 기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네로는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의 목을 잘라버리고, 도시를 전부 불과 칼로써 황폐화시킨 연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결심했다고 한다 [...] 어느 왕이든 이와 같은 음모를 머리 속에 품고 진지하게 추진하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 순간에 국가에 대한 일체의 배려와 생각을 포기한 셈이다.” (237절)

로크는 이 경우 주인이 노예를 버릴 때 노예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듯이 왕은 그의 신민을 다스릴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2) 로크가 드는 또 하나의 예는 왕이 자신을 다른 왕에게 종속시킴으로써 그의 조상들이 그에게 남긴 왕국 그리고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의 수중에 맡긴 왕국을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넘기는 경우이다.

“아마도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로써 왕으로서의 존엄의 주된 부분, 곧 그의 왕국에서 하느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며 또한 그는 그의 인민의 자유를 주의 깊게 보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민을 배반하여 그들을 외국의 권력과 지배하에 강제로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왕국을 양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이전에 가졌던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원래 그 권력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38절)

로크는 두 경우 모두에서 왕은 합의된 정부형태를 보존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선과 재산의 보존이라는 정부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고, 자신을 실질적으로 인민과 전쟁상태에 놓은 것으로 간주한다. “인민에게 기도된 위해에 대해서 인민은 그것이 행해지기 전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 (239절) 는 로크의 말은 전제 정치가 기도되는 단계에서도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왕이 전제 군주가 될 때 인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경우를 왕이 전제 군주로 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애쉬크래프트에 따르면 한 경우는 왕이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치할 때 왕은 전제 군주가 되며, 다른 한 경우는 왕이 자신의 권리를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할 때 왕은 전제 군주가 된다. 전자는 고전적인 정치 이론에 입각해서 도출되는 것이며, 후자는 중세의 정치적 사유에 뿌리를 둔 것이다(R. Ashcraft, 1994. p.228 참조). 즉 왕이 권력을 꾀통치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면 전제 군주가 되며, 왕이 권위를 상실한 채 무력을 쓰면 전제 군주가 되며, 두 경우 모두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6. 인민의 저항권에 대한 반론

정부가 해체될 경우 혹은 권한 없는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인민이 복종하지 않고 저항할 자유가 있으며 인민에게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인민은 무지하다는 것과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 반론의 주요 요지이다. 더구나 인민이 언제든지 입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갖게 된다면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주요 논거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인민은 무지하고 항상 불만에 차 있기 때문에 인민이 불안정한 의견과 불확실한 변덕 위에 정부의 토대를 쌓은 것은 정부를 확실히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게다가 인민이 기존의 입법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떠한 정부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223절)

로크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 인민의 보수성을 들어 재 반박한다. 즉 인민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기존의 통치형태를 벗어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은 이미 그들이 익숙해진 체제의 잘 알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도록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초적 결함이 있거나 시간의 흐름이나 부패에 의해서 우발적인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심지어 온 세상이 그 결함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정해도, 그것을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민은 그들의 낡은 제도를 버리는 것을 이처럼 지체하거나 꺼리므로, 현재는 물론 과거에 이 왕국에서 일어난 많은 혁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 귀족, 평민들로 구성된 예전의 입법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분노에 찬 봉기로 몇몇 군주의 머리 위에서 왕관이 벗겨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민들이 그 왕관을 다른 왕가로까지 옮긴 적은 결코 없었다.” (223절)

로크는 인민에게 저항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세 가지 근거를 더 제시한다. 1) 인민들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서 자의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발견하면 인민에게 저항권을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인민들은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는 인민은 기회가 닿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담을 벗어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간절히 바라며 추구하는데, 그러한 기회란 인간사가 변하기 쉽고 어리석음과 우발적인 사고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닥쳐오게 마련이다.” (224절)

2) 인민에 의한 혁명은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치하는 편에서의 커다란 과오, 많은 잘못과 폐단을 야기하는 법률, 인간적인 약점에서 비롯되는 모든 사소한 비리에 대해 인민들

이 반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를 감당한다. 그러나 만약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된 남용, 속임수, 술책 등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통치자의 의도가 인민들에게 뻔히 보이게 된다면, 그리하여 인민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3)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그들의 신탁에 반하게 행동할 때, 인민이 새로운 입법부를 세워서 새롭게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반란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로크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반란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오직 정부의 제도와 법률에 근거를 둔 권리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든 무력으로 그러한 제도와 법률을 망가뜨리고 무력으로 그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반란자(rebel)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와 시민정부에 들어감으로써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그들간에 재산, 평화 및 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력을 내세워 법률에 대항하는 자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반란자이다.” (226 절)

즉 로크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반란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인민의 저항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크가 앞에서 정부가 해체된 경우로 들었던 입법부가 변경된 경우와 입법자들이 그들이 임명된 목적에 상반되게 행동하는 경우 이는 반란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누구든 무력으로 어떤 사회로부터 확립된 입법부 그리고 신탁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률을 제거하는 자는 심판권 즉 그들 상호 간에 전쟁상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인민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재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인민이 세운 그리고 그 외의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권위를 파괴함으로써 그리고 인민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도입함으로써, 실제로 전쟁상태 곧 아무런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무력의 상태를 도입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 의해서 설립된 입법부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의 결속을 해체하고 인민을 새로운 전쟁상태로 몰아넣은 것이 된다. 그리고 만약 무력으로 입법부를 제거한 사람들이 반란자라면, 입법자들 곧 인민의 자유 및 재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선임된 자들이, 앞에서 밝힌 대로, 바로 그 자유와 재산을 무력으로 침해하여 박탈하고자 할 때는, 그들 역시 반란자와 다름없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애초에 그들을 인민들의 평화의 보호자와 후견인으로 임명한 인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리고 죄질이 가장 나쁜 의미에서 ‘전쟁상태를 재개하는 반란자들(rebellantes)’ 이 되는 것이다.” (227절)

이러한 인민들에 대한 전쟁상태를 초래하는 자들에 대한 인민의 저항은 반란이 아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에 근거함이 없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가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전쟁상태를 도발하는 셈인데, 이 상태에서 이전의 모든 유대는 취소되며, 그 밖의 모든 권리가 중지되며,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로크는 군주에 대한 모든 저항이 반란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한다(232절).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정당한 정부의 구조와 틀을 전복시키는 것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커다란 죄악이라고 단정짓고 나서(230절)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이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옹호한다(233절).

“정당방위는 자연법의 일부이며, 그것이 왕 자신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동체에게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왕에게 재차 복수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왕이 특수한 몇몇 개인들에게 개별적인 증오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우두머리인 국가 전체에 대항하여 침을 수 있는 학정을 통해서 인민 전체 또는 그중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폭정을 자행한다면, 그런 경우에 인민은 단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의 군주를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민은 그들이 입은 손

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든 적절한 존경과 존중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현재 진행중인 공격을 격퇴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폭력에 대해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연에 반하기 때문이다. 인민에게 기도되고 있는 위해를 인민은 그것이 행해지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 (233절)

7. 최후, 최고의 주권자로서 인민

그렇다면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를 판단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로크의 답변은 인민이 재판관이라는 것이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따라 잘 처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사람은 바로 신탁자 자신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만약 법률이 침묵하고 있거나 모호한 사안 그러나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사안을 놓고 군주와 일부 인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러한 사례의 경우 적절한 심판관은 전체로서의 인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주가 그에게 맡겨진 신탁을 수행하고 있고, 법률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군주가 신탁에 반해서 또는 신탁을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래 의도한 신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적절히 판단할 사람으로, 최초에 그에게 그러한 신탁을 부여한 전체 인민 이외에 달리 누가 있겠는가?” (242절)

이처럼 인민을 최고의 주권자로 볼 때 앞서 이미 언급한 정당한 인민의 저항에 대한 로크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될 때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론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조건이 추가되면 나치 지배하의 독일의 예가 제기한 곤경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A. Lloyd Thomas, 1995. p.87 참조).

결론적으로 로크에게 각 개인이 사회에 들어갈 때 그 사회에 양도한 권력은 사회가 존속되는 한 결코 개인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공동체에 남아 있다.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어떤 공동체도,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입법권을 그들의 후계자를 정하는

지침 및 권위와 더불어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부여하고, 그 집단이 계속 유지되면, 통치가 지속되는 한 입법권이 결코 인민에게 되돌아 가지 않는다. 입법부에 영구히 지속될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인민들은 그들의 정치 권력을 입법부에 양도한 셈이고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인민들이 입법부의 지속에 일정한 한계를 부과하고 이 최고의 권력을 특정한 인물 또는 집회에 오직 일시적으로만 부여하였다든가 또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실정에 의해서 그러한 권력을 몰수당한 경우에는 통치권의 몰수나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간다. 이 경우 인민은 최고의 권리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되며, 스스로 입법권을 계속 가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형태를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입법권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할 궁극적 권리(권리를 갖게 된다)(243절).

게임의 규칙과 합의가 통치자 자신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호소할 데는 피통치자 자신의 행동이다. 로크는 이를 ‘하늘에 호소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다(8, 87, 176, 240-243절 참조). 이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들의 적극적 저항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허그스(Hughes)는 로크의 말처럼 인민들이 통치자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하늘에의 호소’가 단지 ‘인민들의 힘’에의 호소 ‘인지 최후의’ ‘역사의 심판에의 호소’ ‘인지가 로크에게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M. Forsyth, 1993. p.210 참조).

결론: 로크 정치 사상의 현대적 의의 –

‘정치성’ (the political) 개념을 중심으로

로크 정치 사상이 현대 정치 이론 및 정치 현실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크다. 이 가운데서도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질서를 대변하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의 확립자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로크가 파악한 ‘정치성’ 혹은 ‘정치적인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

늘날의 민주주의 해석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로크 정치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치성’에 대한 개념화가 평가의 기준이 된 것은, ‘정치성’에 대한 이해방식에 따라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의미, 정치적 삶이 지향하는 목표, 누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와 같은 정치 사상에서 근본이 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로크가 파악한 ‘정치성’은 ‘제한적이고 대의적인 정부’를 유일하게 정치적인 정부로 파악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악은 인간의 삶을 1) 단지 일상적이며 삶의 필요와 연관된 ‘사적 영역’과 2) 특별히 선출된 대표자들이 사적 영역의 삶을 보호하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공적 영역’으로 나누고, 후자 즉 공적 영역만을 정치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로크의 ‘정치성’에 대한 이해는, 정치란 상이한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책임 있는 정당에 기반해서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 기능을 행사하게 한다는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의 관점에 깊숙이 녹아 있다. 그러므로 로크의 세례를 받은 자유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완숙하게 발전한 현대 정치 국가의 이론은 ‘정치성’을 무언가 일상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추상화된 그리고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며, 사적 영역의 불평등과 상충하는 이해관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월린(S. Wolin)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적인 ‘정치성’에 대한 이해는 ‘정치성’의 독특하고 자율적인 의미를 상실하거나 잠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로크라는 것이다(S. Wolin, 1961, p.290). 월린에 따르면 고대 아래로 ‘정치성’은 공적이고, 전 공동체에 공통되며, 일반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간주되어왔고, 사적인 영역과 명확하게 대조되며, 독특하고 자율적인 것으로 정립되어 왔다. 특히 ‘정치성’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 참여와 시민권은 인간의 독특한 자기 완성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자유주의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 로크의 이론과 더불어, ‘정치성’에 대한 이러한 전

통적 개념화가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와 같은 ‘사회성’(the social)의 영역이 자기 규제적인 영역으로 개념화 됨으로써 ‘정치성’의 영역을 잠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성’은 단지 잔여적 중요성만을 지니게 되었고, 시민권은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정치 참여는 방어적인 활동으로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다(Carole Pateman, 1975. pp.242-244). 윌린이 보기에 로크가 이러한 정치성의 승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로크가 모호한 자연상태 즉 사회적 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연상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독특한 정치적 지위를 모호하게 한 것과 연관이 있다. 윌린에 따르면 로크의 자연상태는 사람들의 결합체라는 점에서 사회적이고, 자연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지닌 자연법의 집행권은 개인 판단의 오류 가능성, 편파성 등으로 인해 자연상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이러한 불안전한 상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시민 사회라는 정치 공동체의 결성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연권과 더불어 누리던 자연적인 ‘정치적’ 권리 즉 사적 판단에 입각해 자연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대신할 대표 혹은 통치권자에게 위임하는데, 통치자가 가지는 정치적 권위는 이처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위임받은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윌린이 말하는 ‘정치성의 승화’, 페이트만이 말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즉 로크가 말하는 자연권으로서의 개인의 정치적 권리는 생명·자유·재산의 권리와는 달리, 그 실현을 위해서는 항상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판단에 입각한 개인의 자연법의 집행권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대표자의 판단과 국가에 의한 공정한 자연법의 집행권에 항상 자리를 내어 주어야만 한다. 사회 생활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의 분화는 자유주의가 이를 위해 준비한 장치이다. 사적 영역에서 개인은 사적인 판단을 행사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적 영역 즉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사적인 판단은 배제되고, 자연적인 정치적 권리는 포기되며, 결정은 특별히 선택된 대표자들이 개인들을 대신하여 내린다. 정치는 공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이

되며, 정치적 영역은 사회의 구성원에게 대상화되고 외적인 하나의 사물 즉 국가로서 나타나게 된다. 페이트만은 이를 정치의 ‘승화’ 와 구분하여 ‘물상화’ (Reification)라고 부른다(어네스트 바커 외, 1995. p.263). 정치적 영역은 물상화된 실체로 되어 항상 시민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된다.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시민들이 정치적 주권자이고 이를 투표 행위를 통해 실천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투표하는 자에 불과하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국가가 제대로 정립되고,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어 대의제 민주주의가 명실 공히 자리를 잡으면, 사적인 판단이 배제되지만 정치 영역에서 재등장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앞서 배제되었던 사적인 판단이다.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로크 정치 사상의 또 다른 역설이다. 모든 사회는 정치적 사회이며, 사적인 영역의 구체적 사회적 관계와 그 위에 부과된 자유주의적 국가간의 대조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주의적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은 사라진다. 자유 민주적 국가는 이제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 특히 경제 생활에 개입하며 그 산물이 국가 관리 자본주의이며, 군·산·정 복합체이다.

아렌트(H. Arendt)가 지적한 근대 이후 서구 정치의 문제점도 바로 동일한 것이다. 아렌트는 이를 ‘사회에 의한 정치의 흡수’ 라고 표현한다 (H. Arendt, 1959. p.61). 아렌트는 고대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 그리고 ‘정치성’에 대한 파악이 근대에 들어 얼마나 변모 되었는지를 언급한다. 근대 세계에서 경제적 활동은 사적인 가정의 범위로부터 벗어나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고대에서 사적 영역의 핵심적 부분이자 가정의 유지를 의미했던 경제활동이 노동력에 근거한 자본 축적의 근간이 되면서, 다른 의미 있는 인간의 활동 영역 특히 정치 영역마저 흡수하여, 그 결과 이제는 국가 차원의 ‘가계 유지’ 인 행정이 정치 영역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윌린과 마찬가지로 ‘정치성’ 을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이며, 인간의 인간됨을 구성하는 원리적 활동으로 간주하지만, 윌린과 달리 정치 영역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유일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렇다면 윌린이나 아렌트가 지적하는 로크와 이를 계승하는 자유 민주

주의에 내재된 역설, ‘정치성의 승화’ 와 ‘사회성에 의한 정치성’의 흡수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자유 민주주의 이론의 라이벌이었던 마르크스주의는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역시 ‘정치성’의 핵심을 ‘사회성’ 즉 경제적 문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자율적 영역으로서 정치성을 부인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쌍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시민에 의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이라는 자연적 권리의 유지와 양립 가능한 ‘정치성’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인데, 자유 민주주의가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참여,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이 대안의 후보로 적절해 보인다.

우리는 사회 계약에 대한 루소의 해석과 자주관리적인 평의회에 대한 아렌트의 주장에서 이러한 대안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루소에 따르면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결성하는 계약에서 다수의 인민이 소수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포기의 대상은 바로 자신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자연적인 정치적 권리를 상이한 자격, 새로운 정치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집단적 자격을 가진 자신들에게 양도하는 것이다(J.J. Rousseau, 1968. p.62).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개별의지의 일반의지에의 종속이다. 루소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이후 개인은 자신이 참여 민주제 하에서 시민으로 활동할 때, 언제나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유지 내지는 회복한다. 참여적인 민주제 하에서 정치적 영역은 여타의 사회 생활 위에 초연하게 군림하는 별도의 자율적인 물상화된 추상물이기를 중단한다. 정치적 영역은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일 때는 언제나 존재하게 된다. 정치적 생활은 전체로서 사회적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통합적인 부분을 구성하게 한다. 정치적 생활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회 생활의 사적인 측면과 구분되지만, 자유주의 이론에서처럼 사회 생활의 사적인 영역에 대립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정치성’에 대한 로크나 자유 민주주의적인 해석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는 참여적인 그리고 자주 관리적인 다층적 단위들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주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평의회(Council)에 대한 아렌트의 해석이 그 한가지 예라 할 수 있다. 미국의 town meeting, 프랑스의

파리 콤뮨, 독일의 Rätedemokratie와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평의회의 전형을 찾는 아렌트는 보다 새롭게 지역 평의회에 기초한 평의회 연방을 기획한다. 이는 평의회가 피라미드 구조로 결합된 연방으로서 이러한 체제의 장점은 시민들이 지역 평의회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비록 피라미드 구조이긴 하지만 권위는 상향적이지 하향적이지도 않다. 정치적 권위는 “위로부터나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오며, 연합된 단위들은 그들의 권력을 상호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한다.” (H. Arendt, 1973. p.188) 평의회의 대의원들은 상부나 하부 모두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권위는 사실상 각 피라미드의 단층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적인 참여적 민주제에서도 상위 단위의 평의회에 파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일종의 대의제)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참여 민주주의의 더 큰 문제는 그 경험적 함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근대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바탕으로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예가 없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비일상적인 혁명적 상황이나 소규모 공동체를 토대로 한 실험적 상황, 한 두 가지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정치적 경험을 제외하고 참여 민주주의는 그 현실적 합성과 운영 가능성을 항상 의심받아 왔다. 물론 극소 전자 기술의 발전에 토대를 둔 전자 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모든 가정에 투표 장치를 가설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 집단적 행동으로 읊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다양한 정체성과 신분을 갖는 사적인 개인이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일관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난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곤란한 원칙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2003년 대한민국에서 ‘참여 정부’의 출범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이 글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로크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이해, ‘정치성’에 대한 해석의 경험적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다. 물론 한국의 ‘참여 정부’의 실험은 루소, 아

렌트, 월린이 말하는 참여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대의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국민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로크와 루소로 대변되는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수렴하는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될 정치 과정은 정치 사상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존 로크 저, 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문학과 지성사, 1996
우도 틸 지음, 이남석 옮김, 『로크』, 한길사, 1998
김남두 편역, 『재산권 사상의 흐름』, 천지, 1993
맥퍼슨 저, 황경식/강유원 역,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박영사, 1990
어네스트 바커 외, 강정인/문지영 편역, 『로크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5
M. Forsyth 편, 부남철 역, 『서양정치사상입문』, 한울, 1993
브라이언 레드헤드 편집, 황주홍 옮김, 『서양정치사상』, 문학과 지성사,
1993
한국사회윤리위원회 편, 『사회계약론 연구』, 철학과 현실사, 1993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by Peter
H. Nidditch, Clarendon Press, Oxford, 1975
_____, *Two Tracts on Government*, ed. by Philip Abra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_____, *Essays on the Law of Nature*, ed. by W. von Leyden,
Clarendon Press, Oxford, 1954
_____, *Epistola de Tolerantia and a Letter on Toleration*,
ed. by R. Klibansky and J.W. Gough, Clarendon Press,
Oxford, 1968
_____, *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as delivered in*

- the Scriptures*, Works, 7th edn., Vol. III
_____,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by Peter Laslett,
2nd ed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Anchor Books, 1959
_____, "Thoughts on Politics and Revolution," in *Crises of the Republic*, Penguin Books, 1973
- Richard Cox, *Locke on Peace and War*, Oxford, 1960
- Maurice Cranston, *John Locke: A Biography*, Longmans, 1957
- John Dunn, *The Political Thought of John Locke*, Cambridge Univ.
Press, 1969
_____, *Locke*, Oxford Univ. Press, 1984
- O.F. Gierke, tr. by E. Barker, *Natural Law and the Theory of Society*, Cambridge, 1934
- J.W. Gough,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 by J.W. Gough, Oxford, Basil Blackwell, 1976
- I. Harris, *The Mind of John Locke: A Study of Political Theory in its Intellectual Setting*, Cambridge U.P., 1994
- T. Hobbes, *Leviathan*, ed. by G.A.J. Rogers, Thoemmes Pess, 1995
- P. Helm, *Belief Policies*, Cambridge Studies in Philosophy,
Cambridge U.P., 1994
- F.C. Hood, *The Divine Politics of Thomas Hobbes*, Oxford, 1965
- Willmoore Kendall, *John Locke and the Doctrine of Majority-Rule*,
Urbana Illinois, 1941
_____, *John Locke and the Doctrine of Majority-Rule*,
Urbana, Ill., 1941
- H.J. Laski, *Political Thought in England from Locke to Bentham*,
Home University Library of Modern Knowledge, no. 103,
1925
- J. Marshall, *John Locke: Resistance, Religion and Responsibility*,

- Cambridge Studies in Early Modern British History,
Cambridge U.P., 1994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1972
- J.J.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tr. by M. Cranston, Penguin Books, 1968
- A.J. Simmons, *On the Edge of Anarchy—Locke, Consent, and the Limits of Society*, Princeton U.P., 1995
- W.M. Spellman, *John Locke*, Macmillan, 1997
- G. Sreenivasan, *The Limits of Lockean Rights in Property*, Oxford U.P., 1995
- Leo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1953
- D.A. Llyod Thomas, *Locke on Government*, Routledge, 1995. *The Cambridge Companion to Locke*, ed. by Vere Chappell, Cambridge, 1994.
- C.E. Vaughan, *Studies i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Publications of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25
- J.W.N. Watkins, *Hobbes's System of Ideas*, Gower, 1965
- S. Wolin,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Allen and Unwin, 1961
- J.W. Yolton, *The Locke Reader*, Cambridge U.P., 1977
- Richard Ashcraft, “Locke's Political Philosoph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ocke*, ed. by Vere Chappell, Cambridge, 1994
- Ernest Barker, “Introduction”, in Barker ed., *Social Contract: Essays by Locke, Hume, and Rousseau*,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P. Laslett, “The English Revolution and Locke'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in *Cambridge Historical Journal*, xii, no.1, 1956
- Carole Pateman, “Sublimation and Reification: Locke, Wolin and

the Liberal Democratic Conception of the Political,"
Politics and Society, 5, 1975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4호

발행일 2003년 5월 25일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백종현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인쇄 관악사 02) 877-1448, 883-1381
